HOMO MIGRANS

Vol.12

Migration, Colonialism, Racism

2015

JUNE

Korean Society for Migration History

Homo Migrans -
Migration, Colonialism, Racism
Vol.12 (Jun. 2015)

이주사학회 운영진

회장 김용우(교원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용일(대구교대)
학술이사 김유정(한국외대)
권윤경(서울여대)
나혜심(성균관대)
마은지(숭실대)
재정이사 문종현(한양대)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오영인(성균관대)
편집위원 고유경(원광대)
김정욱(인천대)
신동규(창원대)
양재혁(성균관대)
이경일(경성대)
이선희(충북대)
이찬행(성균관대)
정용숙(대구대)
홍용진(고려대)

주소 706-715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이용일 교수 연구실
전화번호 053-620-1325
홈페이지 http://www.homomigrans.com
이메일 homomigrans@gmail.com
편집위원회 전용 이메일 homomigransed@gmail.com
회비 10만원
납부계좌번호 국민은행 781402 04 104469 문종현(이주사학회)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12호(2015년 6월)

발행일 2015년 6월 30일
지은이 이주사학회
펴낸곳 이주사학회
주소 706-715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이용일 교수 연구실
전화번호 053-620-1325
이메일 homomigrans@gmail.com
홈페이지 http://www.homomigrans.com
ISSN 2093-3061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2015년 6월
ISSN: 2093-3061

<논문>
영화 <킹덤 오브 헤븐(Kingdom of Heaven)>
: 공존과 공생의 논리에 대한 역사적 탐구 ——— 홍용진 05
식민지 이주 정착민과 영제국
: 19세기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로 ——— 이민경 25
프랑스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본 프랑스 공화주의 이념의 적용
——— 김진영 47
1960-1970년대 노동총연맹의 이주노동자 인식과 이미지 생산
——— 신동규 75

<서평>
Aviva Chomsky, *Undocumented: How Immigration Became Illegal* (Beacon Press, 2014) ——— 김헌기 94
폴 콜리어, 『엑소더스』, 김선영 옮김, 21세기북스, 2014.
——— 강준영 98

<연구회 휘보> 108

<이주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111

<『호모 미그란스』 투고 규정> 114

<『호모 미그란스』 편집 규정> 118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Migration, Colonialism, Racism

Jun. 2015
ISSN: 2093-3061

<Article>

Historical Research on the aspects of coexistence and symbiosis in the Film <Kingdom of Heaven> ——— Yongjin Hong 05
The Settlers on the British Colonies and the British Empire: With Special Reference of the 19th Century's Australia —— Min-Kyoung LEE 25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French republicanismthrough the French nationality law ——— Jinyoung Kim 71
The CGT's Perception of migrant workers and production of images in 1960s and 1970s ——— Dongkyu Shin 75

<Book Reviews>

Aviva Chomsky, *Undocumented: How Immigration Became Illegal* (Beacon Press, 2014) ——— Hun-Ki Kim 94
Paul Collier, Kim Sunyoung(trans.), *Exodus* (21c Books, 2014) — Junyoung Kang 98

<Bulletin> 108

<Ethic Rules> 111

<Contribution Rules> 114

<Editing Rules> 118

Korean Society for Migration History

Homo Migrans

“이제 전 세계의 지구촌화라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와 함께 인간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요구되고,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인문학의 자기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의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담론을 넘어서는 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Homo Migrans Vol.12 (Jun. 2015): 5-24

■ 논문 ■

영화 <킹덤 오브 헤븐(Kingdom of Heaven)> : 공존과 공생의 논리에 대한 역사적 탐구

홍 용 진

1. 들어가며: 공존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

현재 한국사회가 짊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다문화 사회'라는 문구로 대변되는 이민과 이주 문제다. 21세기에 들어와 가속화 된 신자유주의와 경제 세계화의 물결은 이민자와 이주의 문제를 보다 깊이 한국사회에 각인시키고 있다. 하지만 사실 한국인들에게 이주의 문제가 낯선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것은 외국인들의 국내이주(immigration)가 아닌 한국인들의 해외이주(emigration)를 지칭했으며 이는 한국 해외동포들이 겪는 서러움의 공감대 속에서 이해되어 왔다. 이제 21세기에 이것은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과 관련된 국내문제로, 한국사회에 대한 공존과 통합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인의 해외이주(emigration)와 외국인의 국내이주(immigration)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경험한 한국의 이중적 이주경험, 즉 해외에서의 공존과 한국에서의 공존은 양자 모두 공통적으로 '공존 가능성'이라는 문제틀로 수렴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틀을 가장 잘 시각화하고 있는 영화들 중의 하나가 바로 12세기 말 제3차 십자군[1]을 전후로 한 예루살렘 왕국을 배경으로 하는 리들리 스콧의 영화 <킹덤 오브 헤븐(천상의 왕국)>일 것이다.
사실 이 영화는 2005년 개봉 당시 수많은 찬사와 동시에 우려 섞인 비판을

1) 십자군 운동에 대한 최신의 종합 개설서로는 Christopher Tyerman, *God's War - A New History of Crusades*(London: Penguin Books, 2007) 참조. 연구사 정리로는 미셸 발라, 「십자군에 관한 20세기 역사서술 -프랑스 학계를 중심으로」, 『서양중세사연구』, 16호 (2005), 199-201.

함께 받았다. 이 영화는 12세기 말 십자군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공존과 공생에 대해 강조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001년의 9.11 사건 이후 통속적으로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기독교적 서유럽-미국세계와 이슬람 세계 간의 갈등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서유럽이나 미국도 이슬람도 아닌 우리는 이 영화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단순한 액션 스펙터클이 아닌 이상, 이 영화는 현재 한국 사회에 무엇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정답은 없지만,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면서도 창작된 허구(fiction)인 이 영화를 역사적 사실 및 배경과의 비교 속에서 읽어 나갈 때, 그 영화가 가져다주는 의미작용은 더 풍성해질 것이다.

의미를 풍성하게 만드는 지점은 바로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한 두 가지 비판적 축들 때문이다. 두 축들 중 하나는 영화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바로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사이의 이분법적 대결구도이다. 이러한 이분법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도 있지만[2] 필자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영화는 이러한 이분법을 비판하기 위해 이러한 이분법을 보다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듯이 보인다. 다른 한 축은 영화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인물들 간의 대사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바로 중세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위계제에 대한 비판이다. 즉 영화는 귀족과 비귀족 사이의 구분, 성직자와 기사 사이의 구분 등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간에게 가해지는 여러 사회적 차별들이 정당한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차별에 대한 비판이 근대적인 의미의 정치적 평등과 직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는 "신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창조된 인간"이라는 기독교적 주제를 가지고 당대사회의 맥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대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되돌아보게 한다.
결국 두 가지 축들은 중 하나는 한 공동체의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2) 이 영화에 비판적인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영국과 미국의 십자군 전문 역사학자인 조나단 라일리스미스(Jonathan Riley-Smith)와 토마스 F. 매든(Thomas F. Madden)을 들 수 있다: Jonathan Riley-Smith, "Ridley Scott's new Crusades film 'panders to Osama bin Laden'", *The Telegraph* (18 Jan. 2004); Thomas F. Madden, "Onward P.C. Soldiers: Ridley Scott's Kingdom of Heaven", *National Review Online* (May 17, 2005).

경계설정에 대해서, 다른 하나는 공동체 내부를 가르는 경계설정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비판적 축들은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되는데, 그곳은 바로 인간성 그 자체가 발생되는 지점이다. 여기에서 영화는 그것이 어떠한 종류이건 인간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자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공유지점은 다시 두 축으로 발산이 되는데 하나는 타인들에 대한 이해와 개방으로, 다른 하나는 공동체 내부의 동등한 권리확보로 나아간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글은 영화에 나타난 주요한 장면들에 대해 영화 내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이후에는 영화와 실제 역사적 사실과의 비교를 통해 영화가 지닌 현재적 의미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영화(fiction) 속으로 : 천상의 왕국은 어디에?

십자군 100년의 과정이 짧은 자막으로 소개된 후 영화는 “1184년 프랑스”라는 자막과 함께 시작한다. 눈발이 휘날리는 음울한 겨울날씨는 이곳이 노르망디나 피카르디, 또는 플랑드르와 같은 북부지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아내의 자살로 실의에 빠진 젊은 대장장이 밸리언(발리앙 Balian)은 자신의 재산을 가로챌 기회만 노리는 마을의 말단사제인 동생을 우연치 않게 죽이고 만다. 때마침 이 마을에는 일군의 십자군 기사들이 들르게 되는데 그 수장은 바로 밸리언의 아버지 갓프리(고드프루아Godefroi)였다. 그는 이 고향땅에서 자신을 죽여서 예루살렘 영지를 상속받으려는 형의 아들(조카)과 그의 군대와 충돌을 하게 되고 깊은 상처를 입는다. 결국 그는 자신의 서자 밸리언과 함께 ‘성지’로

되돌아가기 위한 향한 여정에 오르게 된다.[3)]

성지로 가는 항구 메시나에서 갓프리는 상처가 깊어 사망하게 된다. 죽기 전 그는 밸리언에게 이슬람과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그에게 기사서임을 하고 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이벨린(또는 이블린)[4)]의 영주로 임명하였다. 성지로 가는 배가 난파를 당해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우여곡절 끝에 무슬림 현자 이마드의 도움으로 찬란하고 번성한 예루살렘 왕국[5)]에 당도하게 된다. 이벨린의 새로운 영주로 인정받은 그는 예루살렘 왕궁의 일원으로 이곳 정치세계에 입문하게 된다. 세력을 넓혀가는 살라흐 앗딘(살라딘)의 위협 앞에서 왕궁은 두 파로 분할되어 있었다. 살라딘과의 전쟁을 무모하다고 여기고 그와의 평화와 공존을 주장하는 트리폴리 백작 레몽 3세, 일명 티베리아스[6)]와 무조건적인 성전을 외치는 성전기사단의 수장 기 드 뤼지냥과 레이놀드(르노) 드 샤티용. 그 동안

3) 영화에서 대장장이 밸리언(올랜도 블룸)은 갓프리(리암 니슨)의 사생아로 이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갓프리가 정식으로 결혼한 본처와 정실 자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 아마도 갓프리는 십자군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밸리언을 낳은 듯 하다. 즉 밸리언은 귀족인 아버지와 평민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위계상의 경계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영화에서 가족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인물은 밸리언의 동생으로 나오는 마을 사제(마이클 쉰)이다. 그가 갓프리의 아들로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필자 추정으로 마을 사제는 밸리언과 이부형제(異父兄弟)인 것으로 보인다. 중세에 사제는 귀족과 평민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 물론 일반 평민 출신 사제가 고위성직자가 되기란 매우 힘들었다.

4) 예루살렘 왕국 내 영지 이름으로 현재 명칭은 야브네(Yavne)이다

5)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공했던 십자군이었던 제1차 십자군의 원정(1096-1099) 결과로 시리아-팔레스틴 지역에 에데사 백작령, 안티오크 공령, 트리폴리 백작령, 예루살렘 왕국이라는 4개의 십자군 제후국이 건설되었다. 당시 한창이었던 북부 프랑스의 전형적인 봉건제를 정치조직으로 채택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십자군의 정복은 매우 잔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1099년의 예루살렘 함락의 잔혹함은 지중해 지역 전체에 엄청난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1187년 기 드 뤼지냥 재위 당시 살라흐 앗딘에 의해 함락 당했으며 이후 잔존 세력이 생장다크레(Saint- Jean-d'Acre)에서 명맥을 이었으나 이 또한 1291년에 멸망하였다.

6) 레몽 3세(Raymond III, 1140-1187)는 트리폴리 백작으로 제1차 십자군에 참가했던 대제후들 중 하나인 툴루즈 백작 레몽 4세의 직계 후손이다. 예루살렘 왕국 내에서 티베리아스(Tiberias) 영지를 결혼으로 획득하였다. 영화에서는 예루살렘 왕국 내 그의 영지 이름에 따라 티베리아스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

밸리언은 이블린 영지를 새롭게 개간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한편 화평과 공존에 더 큰 관심을 가진 볼드윈(보두앵) 4세의 신임을 얻는다. 또한 그의 여동생 시빌라(시빌)과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영화는 주인공이 프랑스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프랑스로 되돌아오는 여정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전형적인 교양소설(Bildungsroman)의 줄거리를 따른다. 이 험난한 여정을 통해 주인공은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대해 깨닫게 된다. 즉 영화는 세상에 대한 비관과 염세에 빠져 있던 한 개인이 드넓은 세상을 인식하고 그 세상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 사이의 공존의 가능성을 확신하며 이를 통해 세상에 대해 열린 자아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주인공이 본시 원했던 종교적 깨달음과는 전혀 상반되는 성격을 지닌다. 그가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애초에 종교적 의미의 구원을 목표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밸리언은 골고다 언덕에서 어떠한 계시도 받지 못하게 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은 예루살렘 인근 영지 이벨린에서의 삶이었다. 위계가 없이 농민과 기사, 성직자들이 합심하여 황무지를 사람 살만한 땅으로 개간해 나가는 노동의 과정을 통해 밸리언은 내세의 구원이 아닌 현세에서의 삶의 행복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그의 태도 변화는 그가 이벨린 영지에 있는 저택에 들어섰을 때 거실 벽면에는 “죽음의 무도(Danse Macabre)”를 보는 장면을 통해 암시된다(01:07:10). 그림 위에는 “현재 우리의 모습은 너희들의 모습이 될것이다(qoud sumus hoc eritis; what we are, you will be)”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는 해골로 표현된 망자들이 살아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 그림과 문구는 이 영화에서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동등한 인간이라는 점을 암시하며 동시에 죽음과 대비되는 인간 삶의 강도를 높여준다. 밸리언은 하이데거처럼 죽음을 선취하지만 이에 대한 극복을 실존에 대한 각성이 아닌 타인들과의 연대를 통한 운명공동체의 건설에서 찾고 있다. 나의 한계를 의미하는 죽음과 불안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닌 타인들에 대한 관심과 이들과의 공존이라는 실현가능한

상태로 – 레비나스적 의미에서 – 초월한다.[7] 이렇게 해서 천상의 왕국, 천국은 이 세상 바깥의 어딘가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과 공생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예루살렘 왕궁은 이러한 공존과 공생과는 거리가 먼 분열과 배제, 대립의 도가니로 그려진다. 십자군 제후국들을 압박하며 팽창해 오는 살라흐 앗딘의 세력 앞에서 한편으로는 모든 이교도들에 대한 극단적인 항전을 앞세우는 주전파와 이들과의 공존과 평화를 통해 십자군 제후국들을 유지하고자 하는 화평파가 분열한다. 영화는 기 드 뤼지냥과 르노 드 샤티용이 이끄는 주전파를 피에 굶주려 양민들까지 무차별 학살하는 살인귀와 같이 그려낸다. 반면 티베리아스를 중심으로 한 후자를 온건하고도 충성스러운 합리주의자들로 제시한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가련한 왕 볼드윈과 주인공 밸리언은 티베리아스를 지지한다.

화평파들의 노력은 결국 주전파들이 감행한 비무장 무슬림 카라반 대학살과 살라흐 앗딘 여동생에 대한 살해로 위기를 맞는다. 이들에 대한 처벌을 약속한 볼드윈 4세의 노력으로 큰 충돌을 피하긴 했지만 나병에 걸려 있던 왕은 얼마 못가 죽고 만다. 시빌라에게는 일찍이 사별한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바로 볼드윈 5세(보두앙 5세)로 즉위한다. 하지만 그 또한 나병환자로 곧 요절하게 되고 왕위는 시빌과 그의 새 남편 기 드 뤼지냥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광적인 주전파의 폭력성은 예루살렘왕의 사후에 기 드 뤼지냥의 오만하고도 무모한 태도로 벌어진 1187년의 하틴(Hattin) 전투에서 파국을 맞이한다. 병력의 대부분을 상실한 예루살렘 왕국의 운명은 명약관화하였다. 살라흐 앗딘 군대에 의한 일방적인 정복이 그것이다. 하지만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삶의 조건들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밸리언은 남아 있는 군사들과 일반 양민들을 한데 끌어 모아 방어준비를 한다. 무조건적인 전쟁을 외치던 성직자가 비굴한 굴종의 태도로 돌변하는 에피소드는 밸리언이 귀족도 아닌 일반 평민 남성들을 모두 한

7)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강영안, 『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11), 104-112.

번에 기사로 서임하는 장면과 대비된다.

여기에서 밸리언이 행한 기사서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위기상황에서 미봉책으로 실시한 회유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애초에 귀족의 서자로서 대장장이에 불과했던 밸리언은 누구에게 예속당하는 것도 누구를 예속하는 것도 싫어했던 자이기 때문이다. 이미 그는 이방의 땅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굴복시켰던 무슬림 현자 이마드에게 동일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한마음으로 뭉친 예루살렘 주민들과 밸리언의 군대가 필사적으로 저항한 결과, 예루살렘을 어렵사리 정복한 살라흐 앗딘은 밸리언이 제시한 항복조건인 주민들의 생명권과 이동권 보장을 수락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되었던 예루살렘 공성전의 경험, 살라흐 앗딘의 관대함은 밸리언이 이벨린 영지에서 경험했던 삶의 태도를 다시 한 번 그리고 보다 크게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밸리언은 살라흐 앗딘에게 묻는다,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 수많은 생명들이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명멸해 갔는지? 살라흐 앗딘은 대답한다, “아무것도 아니(Nothing)!”라고. 그렇지만 “모든 것(Everything)”이라고. 이 대사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을 통해 내세우는 유일신교들의 대의와 독단은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직 거기에 거주하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진정 중요한 모든 것이라고...(모든 요소들을 획일적로 묶어내는 “All”이 아닌 다양한 것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Everything”이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시빌라와 함께 프랑스의 고향으로 되돌아 온 밸리언. 이들은 여기에서 새로운 십자군의 대오와 마주치게 된다. 그리고 가장 웅장했으나 가장 초라한 결과를 거두게 될 제3차 십자군의 대오가, 가장 용맹하게 싸웠으나 살라흐 앗딘 앞에 중과부적이었던 사자심왕 리처드 1세의

군사들이 멀어져 간다.[8] 결국 영화는 이곳에 여전히 평화가 오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막을 내린다.

하지만 감독의 시선이 마냥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영화는 천상의 왕국이 사람들의 공존과 공생이 현실 속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여전히 긍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존과 공생의 현실화는 불변하는 어떤 지점으로 확고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과정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생존에 대해 '함께 하는 열정', 즉 공감(sympathy)을 지닌 자들이 서로가 운명 공동체를 만든다는 경험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존의 열정과 공생의 논리에 무지한 유럽의 봉건기사들은 배제와 대립의 명분 아래 공존과 공생의 도가니인 성지로 다시 한 번 향한다. 잉글랜드왕 리처드 1세와 같이...

3. 영화의 바깥에서: 역사적 사실들(facts)을 찾아서...

이제 영화에서 한 발짝만 물러서자. 이 영화는 과연 자신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역사현실을 어떻게 가공하고 있을까? 즉 역사적 사실(fact)은 영화적 허구(fiction)에 의해서 어떻게 팩션(faction)이 되고 있을까? 그전에 무엇이 역사적 사실인지 영화가 설치해 놓은 허구적 장치들과 비교해 보면서 짚고 넘어가보자.

일단 실제 예루살렘을 방어했던 밸리언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면적으로

8) 제3차 십자군(1189-1192)은 살라흐 앗딘의 예루살렘 함락 후 서유럽 기독교세계의 쟁쟁한 군주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십자군이었다. 잉글랜드왕 리처드 1세, 프랑스왕 필리프 2세, 신성로마제국황제 프리드리히 1세 등이 참전을 결의했다. 하지만 대대적인 규모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먼저 제국을 호령하던 프리드리히 1세는 용감하게 진격했으나 살렙강을 건너다 익사하였고 그의 부대는 철수하였다. 앙숙이었던 리처드 1세와 필리프 2세의 경우에는 원정 도중 내내 둘 사이의 분쟁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 필리프 2세는 건강상의 악화로 1191년 8월 리처드 1세만 두고 먼저 귀국하였다. 남은 리처드 1세는 살라흐 앗딘을 압박하며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나 결국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1192년 이슬람세력의 예루살렘 통치를 인정하고 기독교인들의 방문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슬람은 본래 기독교인들의 방문을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약은 사실 별 성과라고 부를만한 것도 없는 것이었다.

가공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역사속의 발리앙 디블린(Balian d'Ibelin)은 '프랑크인'의 후손이긴 했지만 프랑스 태생은 아니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정당하게 이벨린 영주권을 계승한 십자군 제후국의 귀족이었으며 영화 중 티베리아스와도 2-3살 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따라서 아버지로 나오는 갓프리라는 존재는 애초에 지어낸 인물이다. 그가 1차 십자군의 영웅 고드프루아 드 부이용(Godefroi de Bouillon)을 연상시키기는 하지만 영화적 장치 차원에서는 주인공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갈 촉매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또한 주인공이 난파를 당한 후 이슬람 현자 이마드를 만났을 리도 없으며 예루살렘 공주 시빌라와 사랑에 빠질 리도, 또 그녀와 다시 프랑스로 되돌아 왔을 리는 더더군다나 없다. 또한 프랑스에 왔을지라도 그가 영화 마지막에서처럼 리처드 1세를 만날 수는 없었는데, 제3차 십자군 당시 잉글랜드군은 프랑스 내륙을 가로질러 간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이베리아 반도를 돌아 지중해 도시들인 제노바와 시칠리아의 메시나를 거쳐 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가 이벨린의 저택에서 본 "죽음의 무도" 테마는 12세기 말이 아닌 흑사병이 거대한 위기를 몰고 온 14-15세기에 등장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인 예루살렘 왕국 내 파벌갈등이다. 트리폴리 백작 레몽 3세와 기 드 뤼지냥, 레몽 드 샤티용은 실제로 예루살렘 왕국 내에서 대립하는 두 파벌을 이끌고 있었지만 전자를 열린 마음의 화평파로만 또 후자를 편협한 주전파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급박하고도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지역의 정세에서 공존과 평화의 이상 대 편협하고 배타적인 잔혹함의 이분법적 대립이란 없었다. 이는 오히려 뒤에 살펴보겠지만 오히려 '문명의 충돌'이라는 현대적인 가치관에 따라 이렇게 의미가 부여되고 있을 뿐이다. 십자군 제후국들 내부에서 두 파벌들 사이의 정치투쟁이 있었듯이 이슬람 세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세력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실제로 트리폴리 백작 레몽 3세가 연합하려고 했던 무슬림들은 살라흐 앗딘의 위협 앞에서 같은 압박을 느끼고 있던 시리아의 다른 이슬람 세력들이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시 '시리아-팔레스틴'[9] 지역은 종교에 의한 흑백논리보다는 지중해 무역의 핵심지역이자 지정학적 요충지로 여러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충돌하는 곳이었다. 이 지역의 다양한 정치세력들 중에 이슬람 세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듯이 다른 종교를 믿는 프랑크인들의 제후국들도 있었던 것이지 오로지 기독교 대 이슬람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판세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었다 (참고로 유일하게 성공적이었던 제1차 십자군의 주역들은 모두 프랑스 왕국 출신의 봉건대제후들이었다. 아민 말루프에 따르면 "아랍 사람들은 십자군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프랑크인들의 전쟁 내지는 침략이라고 말한다.")[10]

세 번째로 예루살렘 공성전도 영화가 그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 감동적인 장면만은 아니었다. 실제로 발리앙이 기사서임을 한 자들은 60여 명에 불과했고 항복은 유럽인들과 이 지역 토박이 기독교신자들 사이의 불화 속에서 이루어졌다. 살라흐 앗딘의 관대함도 발리앙이 먼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죽이고 건물을 무너뜨리겠다는 자결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 기독교인들의 해방은 몸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었고 몸값을 지불 못하면 노예가 되었다. 그리고 발리앙과 시빌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성로마제국 프리드리히 1세, 잉글랜드왕 리차드 2세, 프랑스왕 필리프 2세의 제3차 십자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영화는 세부적인 사건들이 아닌 역사적 상황과 일상생활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는 시대적 정밀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십자군이라는 존재가 사실 12세기 후반에 이르러 라틴 기독교 세계에서 매우 독특하고도 낯선 존재들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

9) 유럽인들은 이곳을 흔히 유럽에서 가까운 동쪽 세상이라는 뜻으로 '근동(Near East, Proche Orient)'이라고 부른다. 그 너머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으로 이어지는 곳은 '중동(Middle East, Moyen Orient)', 아리아인의 '고향' 인도를 건너뛰어서 그 너머에 있는 지역을 '극동(Far East, Extrême Orient)'이라고 칭한다. 이 '근동', '중동', '극동'이라는 명칭들은 동북아시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에게는 '극서(Far West)'지역인 유럽을 중심으로 한 명칭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10) 아민 말루프, 김미선 옮김,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 (아침이슬, 2002), 11.

영화가 시작할 무렵 자막에도 나오듯이 이미 초기의 십자군 원정으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12세기 말에 십자군은 기독교사회의 첨병이라기보다는 불편한 이방인들이었다. 세 위계와 봉건제라는 상상적-현실적 제도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정착시킨 서유럽 중세사회에서 이들은 기이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었다.[11]

갓프리의 형이 동생을 맞이하는 만찬 장면을 보자(00:07:50). 여기에서 형은 갓프리에게 "기사는 기사고 수도사는 수도사지, 둘 다 될 수는 없어(A knight should be a knight, a monk, a monk, not both)!"라고 일갈한다. 10세기 말 이래로 봉건사회가 정착되어 가면서 "기도하는 자(oratores)", "싸우는 자(bellatores)", "일하는 자(laboratores)", 즉 성직자-수도사, 귀족기사, 평민(농민, 상인, 수공업자)의 삼위계적 구분은 기본적인 인간질서라 여겨졌고 11세기에 들어와 이 위계는 서로 넘나 들 수 없는 것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12] 이러한 관념이 약했을 때 조직된 '무장한 순례자'인 십자군은 수도원의 계율에 따르는 경건한 기사로서 수도사와 기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죽기 직전 갓프리가 아들을 기사로 서임하는 동시에 진행된 병원기사단 기사에게 고해를 하는 장면(00:36:50이후)은 이들의 이러한 위계 위반적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백여 년이 지난 서유럽에서 이렇게 위계를 넘나드는 존재는 너무도 이상한 존재로 여겨졌다.[13]

4. 역사와 영화의 경계선에서: 공존과 공생의 문제

이상과 같이 이 영화에서 전개되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들과 몇몇 사건들은 실제 역사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모습 및 사건들과 많이 다르다.

11) 홍용진, 『침략과 이주: 제1차 십자군과 예루살렘 왕국』, 『호모미그란스』 10호 (2014.6), 55-68.

12) 조르주 뒤비, 성백용 옮김, 『세 위계: 봉건제의 상상세계』 (문학과지성사, 1997).

13) Sylvia Schein, "The Image of the Crusader Kingdom of Jerusalem in the Thrteenth Century", *Revue belge de philologie et d'histoire*, t.64, fasc.4(1986), 704-717.

그렇지만 영화가 기본적으로 극 또는 문학 장르에 속하는 창작품이라는 점을 최대한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 영화에 접근해야 할 지점은 단순한 역사적 재현이 아닌 역사적 문제의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작품에 대한 해석과 의미는 매우 다양할 것이지만 먼저 이 영화를 위계의 위반과 공존의 논리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영화에서 갓프리는 운명하기 전에 새로운 땅인 성지에서 모두가 공존하는 "천상의 왕국"이 가능하다는 말을 남긴다. 모든 종교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그것이 바로 "천상의 왕국"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중세유럽사회가 지닌 두 가지 전통적인 틀들을 깰 것을 요구한다. 그 하나는 다른 종교에 배타적인 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봉건사회가 요구하는 위계의 틀이다. 전자가 외부와 내부를 가르는 장벽이라면 후자는 내부에서 층위를 가른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장벽은 21세기에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장벽은 영화에서 성전기사단장 기 드 뤼지냥과 르노(레이놀드) 드 샤티용에 의해서 대변되고 있다. 대장장이 출신의 밸리언과 식사에 합석하게 된 기 드 뤼지냥은 위계제와 문명을 동일시하며 말한다. "감히 내 테이블에 앉아 있군. (...) 못 먹겠군. 손님이 마음에 안 들어. 프랑스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여기에는 문명화된 규범이 없어."(00:59:20-30)

영화는 새로 영주가 된 밸리언의 활동들을 통해 서로 다른 타인들 사이에 공존과 공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긴밀히 접합된 이 두 기존질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는 이벨린 영지에 도착한 후에 기사로서보다는 노동을 하는 자로서 솔선수범하여 무슬림 주민들과 우물을 파고 물길을 내며 땅을 개척한다. 그것은 종교나 위계와 상관없이 모두의 삶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노동이다. 이는 밸리언이 사생아 출신의 대장장이라는 설정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이미 위계들의 경계선상-귀족과 평민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창조적 노동을 상징하는 대장장이 일에 종사했었다. 영화 속 밸리언은 기존의 질서들을 융해시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수 있는 자로 묘사된다. 그리고 잉글랜드의 왕 앞에서 당당하게 대장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이기도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존과 공생이라는 문제의식 자체가 너무 현대적이지는 않은가? 사실 12-13세기에 십자군 제후국들에서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다. 십자군운동은 흔히 알려져 있듯이 단순한 침략과 정복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소수의 십자군은 이곳에 정착하고 뿌리내려 예루살렘을 지속적으로 기독교 세력 안에 장악하고 있어야 했지만 이곳의 토착민들이 기독교도가 아니라고 무작정 몰아낼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전쟁과 정복 이후에, 그러고 그것들에 앞서서 생산과 일상이 가능해야 했다. 아무런 항구적 전망도 없이 무작정 밀고 들어온 폭력적이고 잔혹했던 제1차 십자군(1096-1099)의 성과는 그 미래가 불투명했다. 단적으로 말해 정복이라는 외피를 걷어낸다면 200년 동안 이어진 십자군 제후국들의 역사는 프랑스인들을 필두로한 서유럽인들이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에 강압적으로 불법 이주한 역사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주의 핵심적인 문제인 공존과 통합의 문제를 제기한다.[14]

과연 십자군 제후국들에서 서유럽 출신의 이주지배층과 토착민들 간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기독교도와 무슬림이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었다. 십자군이 지배층이긴 했지만 제후국들 내부에 거주하는 피지배자들의 경우 라틴 기독교도, 동방정교도, 유대인, 무슬림, 및 기타 여러 종파들이 지역에 따라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 중 하나의 종교만으로 결집된 마을도 있었고 상업적으로 번화하여 여러 종교가 공존을 이루고 있는 곳도 있었다. 즉 제1차 십자군의 단순하기 그지없는 기독교도와 비기독교도의 구분법은 이후 이 지역의 통치에 전혀 적용될 수 없었다.

또한 십자군 제후국들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속적이고도 다양한 기독교인들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거나 무슬림일 수밖에 없었다. 지배층은 정치적으로 주변의 왕이나 술탄들과 계속해서 투쟁을 벌였지만 그렇다고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접촉이 배타적인 방식으로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12세기에 예루살렘 왕국의

14) Ronnie Ellenblum, *Frankish Rural Settlement in the Latin Kingdom of Jerusale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Christopher Tyerman, God's War, ch. 7(212-240).

성직자인 기욤 드 티르(Guillaume de Tyr)는 기독교 귀부인들이 동향의 의사들보다는 이슬람이나 유대인 의사들을 더 신뢰하고 있다며 한탄하기도 했다.[15] 기독교 제후들은 서유럽 봉건사회의 틀을 이식하려고 하면서도 무슬림들과 유대인들, 나아가 베두인족들이 각자 자신들만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통치제도들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서유럽의 라틴기독교세계를 떠나 멀리 십자군 제후국까지 이주하는 사람들은 십자군이나 순례자인 것만은 아니었다. 농민들 중에서도 새로운 땅을 찾아 온 자들이 있었고 지중해 교역의 발전은 다양한 상인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였다. 서유럽 기독교세계라고는 하지만 이들의 출신지는 아이슬란드와 러시아까지 포괄하는 등 매우 다양했다. 즉 십자군 제후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 배타적인 기독교적 가치나 서유럽 핵심부 귀족들의 십자군 대의가 모든 것을 장악한 곳이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십자군은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실에 적응해야만 했다. 무슬림을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전처럼 마구 죽일 수는 없었으며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공생해야만 했다. 서유럽의 진출과 더불어 지중해를 둘러싼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에 집결하게 되었다.[16]

---

15) Guillaume de Tyr, Paulin Paris, ed., *Guillaume de Tyr et ses continiateurs* (Paris: Firmin Didot, 1879).
기욤 드 티르(Guillaume de Tyr, 1130-1184)는 <킹덤 오브 헤븐>의 시대인 보두앵 4세 시기의 역사서를 작성한 티르(Tyr)의 대주교이다. 예루살렘 왕국에서 태어났으며 젊은 시절에는 파리를 비롯한 파리 각지에서 수학하였다. '티르'라는 지역은 아랍어로는 "수르Sour"라 하고 동로마제국에서는 그리스어로 "Tyros"라 칭했다. 적어도 십자군 제후국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곳에 정착했던 프랑크인들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영어식 표기인 'Tyre(종종 '티레'라고 한국식으로 표기된다)'가 아닌 '티르Tyr'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16) Pierre Racine, "Une migration au temps des croisades: les voyages de pèlerinage", Michel Balard, Alain Ducellier(dir.), *Migrations et diasporas méditerranéennes (Xe-XVIe siècles)* (Paris, Publications de la Sorbonne, 2002). 459-473; Pierre-Vincent Claverie, "Un exemple de transfert logistique lié à la défense de la Terre sainte: le passage en Orient de Guillaume de Roussillon(1275)", *ibid.*, 475-483; Mohamed Ouerfelli, "Les migrations liées aux plantations et à la production du sucre dans la Méditerranée à la fin du Moyen Âge", *ibid.*, 485-500.

구성원들의 혼종성, 그것은 십자군 제후국들을 구성하는 다양한 개개인들의 공존을 의미하며 정책적인 분리정책, 아파르트헤이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곳에서 공존은 공생이 되지 못했으며 접촉은 접변이 되기 힘들었다. 다양한 원자들의 혼합은 있었으나 융합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러한 평가는 비단 현대 연구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이는 이미 14세기 초에 프랑스왕 주도의 새로운 십자군 원정을 주장했던 피에르 뒤부아(Pierre Dubois)의 생각이기도 했다.[17] 새로운 십자군을 다시 주장하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문제들 중의 하나는 정착을 위한 교육문제였다. 즉 십자군 제후국이라는 전대미문의 삶의 공간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공존했으나 그 요소들이 역동적이고도 유기적으로 밀접한 상호작용을 일으키지는 못한 곳이었다. 기독교 내부에서도 라틴기독교는 그리스정교회와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지만 각자가 지닌 교조주의는 서로의 입장차만을 반복해서 확인할 뿐이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종교문화적 배타성과 사회 위계는 꽤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다.[18]

이러한 공존과 공생의 문제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영화는 밸리언의 생애와 십자군 내부의 파벌 문제, 그리고 예루살렘 공성전의 몇몇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변형시켰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형 또는 왜곡은 분명히 서유럽 중심의 십자군 서술에 대한 교정장치 역할을 하면서 기독교-이슬람의 이분법적 논리를 배타성 및 대립 대 공존과 공생

17) Pierre Dubois, Ch.-V. Langlois(ed.), *De Recuperatione terre sancte. Traité de politique générale par Pierre Dubois*(Paris, 1891), 47-92; Walther I. Brandt(trans.), *The Recovery of the Holy Lan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6).

18) Andrew Jotischky, "The Frankish encouter with the Greek Orthodox in the Crusader States - The case of Gerard of Nazareth and Mary Magdalene", Michael Gervers and James M. Powell (ed.), *Tolerance and Intolerance: Social Conflict in the Age of the Crusades*(Syracuse University Press, 2001), 100-114.
물론 소수이지만 당대 역사가이자 십자군왕국의 성직자인 기욤 드 티르와 같은 자들은 각 종교에 대한 존중의 뜻을 표출하고 있기는 하다. R. C. Schwinges, "William of Tyre, the Muslim enemy, and the problem of tolerance", M. Gervers and J. M. Powell (ed.), *Tolerance and Intolerance*, pp. 124-132; 페르디난트 자입트, 차용구 옮김, 『중세, 천년의 빛과 그림자-근대 유럽을 만든 중세의 모든 순간들』 (현실문화, 2013), 401-402.

사이의 대결문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설득력을 지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허구적·상상적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생각은 21세기에 재개된 서남아시아를 둘러싼 심각한 국제정세와 맞물린다. 영화가 계속해서 허구와 역사왜곡을 무릅쓰고 주장하는 바는 사태의 본질을 종교문명권 간의 충돌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해석하기를 그만두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종교이든, 민족이든, 국가이든 적대적 배타성의 만용에 빠져 나와, 또한 사회 내에서의 위계적 차별의 편협함에서 벗어나서 공존과 공생의 평화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당위명제를 주장하고 있다. 공성전이 끝난 후 밸리언과 살라흐 앗딘이 각자 자신의 언어로(02:48:15), 또 영화 막바지(02:54:36)에 이마드와 밸리언이 이번에는 상대방의 언어로 나눈 인사 "평화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은 이러한 영화의 주장에 의미심장한 방점을 찍는다. 이렇게 살라흐 앗딘과 인사를 나누는 밸리언의 시선과 표정을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리차드 1세와 대화할 때의 시선·표정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앞 장면의 경우 밸리언은 정중하게 말에서 내린 살라흐 앗딘과 대등한 시선에서 서로를 쳐다보지만 표정에서는 존중의 뜻을 비춘다. 뒷 장면의 경우 밸리언은 말에 올라탄 리차드 1세를 올려보지만, 즉 리처드 1세는 권위적으로 밸리언을 내려보지만 밸리언은 서로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표정이다. "나는 잉글랜드 왕이다(I'm the king of England).", "(그러신가?) 나는 대장장이다(I'm the blacksmith)."(02:59:10-15)

5. 나가며: 역사와 영화

공존과 평화를 주장하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킹덤 오브 헤븐>은 토마스 F. 매든 및 조나단 라일리스미스와 같은 몇몇 저명한 역사학자들로부터 오히려 종교적 이분법에 입각한 적대감을 부축일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다. 특히 기 드 뤼지냥 등 십자군 일파의 과격함과 잔인함에 비해 무슬림들과 살라흐 앗딘은 너무나도 관대하게 그려졌다는 것이다. 즉 현재 관객의 입장에서 인도주의에 입각한 보편적 정당성은

기독교인들보다 무슬림에게 부여되고 있어 오히려 "이슬람 근본주의에 기름을 붓고" 이를 정당화해 준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위에서 언급되었던 영화에 나타난 수많은 역사적 부정확성, 즉 왜곡된 사실들을 지적하며 역사적 현실은 영화와 달랐다고, 역시 전문가들도 아닌 자들이 학술적으로 가치가 없는 내용을 영화로 퍼뜨린다고 지적했다.[19] 토마스 F. 매든에 따르면 이들 십자군이 그렇게 난폭하거나 잔인하지 않았으며 당시에 무슬림 군대와 십자군은 비슷한 정도로 또 당대의 맥락에 맞게 교전을 펼쳤다고 말한다.[20] 당대의 기록은 모두 과장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나단 라일리스미스는 기 드 뤼지냥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불량배가 아니라고 통탄해 한다.

필자는 안타깝게도 이들에게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가 무엇이고 또 영화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는 점이다. 만약 당시 기독교측 기록에서나 이슬람측 기록에서나 십자군에 의한 학살이 과장된 것이라면 과연 그 과장의 근거나 이유가 무엇인지, 왜 제1차 십자군의 예루살렘 정복을 무슬림 군대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잔혹한 대학살과 연결시키고 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이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토마스 매든의 주장은 난징 대학살 희생자 수를 축소하는 일본의 이른바 중도 및 우익 역사가들과 닮았다. 사실 잔혹함의 기억은 학살자의 수(양적 측면)가 아니라 잔혹함의 폭력성(질적 측면)에 의거하는 경우가 많다. 부당한 죽음, 비인간적인 죽음과 같이 말이다. 다른 한편 라일리스미스의 경우에는 자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사극들을 읽어보라고 권해보고 싶다. 얼마나 많은 역사왜곡이 있는지 말이다. 극과 역사학이라는 장르의 구분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

19) 대표적으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영국과 미국의 십자군 전문 역사학자인 조나단 라일리스미스(Jonathan Riley-Smith)와 토마스 F. 매든(Thomas F. Madden)을 들 수 있다: Jonathan Riley-Smith, "Ridley Scott's new Crusades film 'panders to Osama bin Laden'", *The Telegraph* (18 Jan. 2004); Thomas F. Madden, "Onward P.C. Soldiers: Ridley Scott's Kingdom of Heaven", *National Review Online* (May 17, 2005).

20) 이러한 입장은 토마스 F. 매든이 집필하고 현재 한국어로 번역된 『십자군』의 기본 논조이다. 토머스 F. 매든, 권영주 옮김, 『십자군』 (루비박스, 2005), 31-32쪽[Thomas F. Madden, *The New Concise History of the Crusade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5)].

역사를 소재로 한 모든 창작물들은 그 극적 구성 때문에 사실과의 차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세세한 역사적 사건과 사실에 대한 실증주의적 대조가 아니라 그 사극이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환기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 역사를 둘러싼 담론의 장은 전문적인 역사학자들만의 것은 아니다. 역사와 관련된 모든 표현들이 역사를 둘러싼 정치문화적 투쟁의 장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문제제기는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때로는 영화가 실증적 역사서술은 하지 못하는 역사적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변형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리들리 스콧 감독의 <킹덤 오브 헤븐>은 역사적이다. 그것이 여전히 현재에도 유효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또 역사가 언제나 현재의 역사라는 점에서도 말이다.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hadrianus@hanmail.net

주제어: 영화 <킹덤 오브 헤븐>(<Kingdom of Heaven>), 역사영화 (Historical Movie), 십자군(Crusade), 공존(Coexistence), 세 위계 (The Three Orders)

(투고일: 2015. 5. 15, 심사일: 2015. 6. 7, 게재확정일: 2015. 6. 11)

<국문초록>

영화 <킹덤 오브 헤븐(Kingdom of Heaven)> : 공존과 공생의 논리에 대한 역사적 탐구

홍 용 진

2005년 개봉된 리들리 스콧의 영화 <킹덤 오브 헤븐(천상의 왕국)>는 세세한 역사적 고증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줄거리와 역사적 사실 차원에서 역사학계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이른바 '역사왜곡'의 문제가 이 영화의 역사적 가치를 폄훼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역사왜곡을 무릅쓰고 이 영화가 강조하고자 하는 문제틀은 진정한 의미의 공존과 공생을 12세기 십자군의 역사에서 모색하는 데에 있다. 그것은 대외적인 종교적 이분법과 대내적인 위계적 구분을 넘어선 인간공동체에 대한 희구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영화에서 이 두 가지 장애물들은 상호전제적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영화는 이른바 '천상의 왕국'이란 내세의 다른 어느 곳이 아닌 이 두 장애물들이 모두 극복되는 현실 세계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은 실증적인 차원에서 역사왜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극작품의 자율성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만한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른바 실증적 역사서술이라는 것이 놓치고 있는 역사적 문제의식을 오히려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 의미심장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Abstract>

Historical Research on the aspects of coexistence and symbiosis in the Film <Kingdom of Heaven>

Yong-Jin Hong

The film <Kingdom of Heaven> of Ridley Scott released in 2005 aroused historical controversies about historical facts and its main synopsis despite its accuaracy in historical representation. However, the so-called 'problem of historical distortion' doesn't harm historical values of this movie. Its insisting problematique despite historical distortion consists in search for coexistence and symbiosis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in the crusade history in 12th Century. It is expressed in aspiration for the human community beyond the religious dichotomy in external dimension and the hierarchical distinction(three orders) in internal dimension. Especially these two obstacles establish a close inter-prerequisite relationship in this movie. In this sense, the movie show that the so called 'kingdom of heaven' doesn't exist in somewhere in the next world but in the actual world overcoming these two obstacles. In spite of historical distortions of the movie <Kingdom of Heaven> in the point of positivist view, they are acceptable in the artistic dimension of work of drama. What is more important is that this movie present significantly the historical problematique neglected by positivist historical writings.

Homo Migrans Vol.12 (Jun. 2015): 25-46

■ 논문 ■

식민지 이주 정착민과 영제국: 19세기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로

이 민 경

1. 영제국 자치령 오스트레일리아: 이상적 국가의 구현?

영화 <오스트레일리아>[1]는 각각의 특성을 가진 등장인물들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 자치령에서 정착민들의 역사를 축약해 보여주는 영화로 시선을 모은 작품이다. 먼저, 남녀 주인공으로 군납용 야생 소들을 잡아 돈을 벌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에 머물고 있던 남편을 만나러 왔지만, 그의 부고 소식부터 듣게 되는 사라 애슐리(Lady Sarah Ashley), 사라와의 안정된 삶보다는 가축 몰이꾼이라는 유랑자 삶을 선호하는 드로버(Drover)가 등장한다. 이들은 영국 상층부 출신 여성 이주민과 백인 남성 소몰이꾼 정착민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 이외에 사라의 남편 소유인 수 천마리의 소떼들을 빼앗으려 살해음모를 세웠던 경쟁 목축업체 운영자 킹 카니(King Carney), 그리고 농장을 차지하려 카니의 살해 계획에 동참한 목장 지배인 닐 플레쳐(Neil Fletcher)가 이주민들 사이의 긴장을 그려내고 있다. 여기에 플레쳐의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봉사해야 했던 원주민 하녀 데이지(Daisy) 및 이 둘 사이의 어린 혼혈아 아들 눌라(Nullah), 그리고 눌라의 원주민 할아버지 킹 조지(King George) 등이 원주민 이야기의 흐름을 구성하고 있다.

1) 영화 <오스트레일리아>는 바즈 루어만 (Baz Luhrmann) 감독, 니콜 키드먼 (Nicole Kidman)과 휴 잭맨(Hugh Jackman) 주연의 2008년 개봉작이다.

본고가 글머리에 이 영화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스트레일리아>가 개봉 당시부터 "진정한 호주"에 대한 이해를 위해 또 호주 성립 역사에 대한 비평적 시각과 도의적 책임을 드러낸 영화로 주목되었던 이유 때문이다. 특히, 줄거리에서 사라에게 양자로 받아들였지만,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의 혼혈아 격리 정책에 의해 수용시설로 보내지는 눌라의 이야기처럼, "도둑맞은 세대(Stolen Generations)에 대한 백인들의 책임"을 이슈화한 영화로 대중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었다.[2]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1930년대에서 2차 대전 즈음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가 영제국 식민지에 정착한 이주민들의 실태를 볼 수 있는 작은 편린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의 배경인 오스트레일리아는 1901년 6개의 식민지역[3]으로 구성된 연방정부(Federation of the Colonies)를 형성했고, 이 정부가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 영제국 자치령 오스트레일리아(Commonwealth of Australia)로 출범하였다.[4] 이후 1931년, 영국 의회가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법(Statute of Westminster)에 의해 영국과 행정적으로 분리되었다. 물론, 이것이 완전한 독립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1942년까지 이 헌장을 비준하지 않았던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 의회가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오스트레일리아를 합법적으로 자치 독립국가로

---

2) Peter Read, *The Stolen Generations: The Removal of Aboriginal Children In New South Wales 1883 to 1969* (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Aboriginal Children Affairs of New South Wales Government, 1981), Foreword; 이석구, 「<오스트레일리아>에 나타난 '인정'의 정치학」, 『문학과 영상』, 가을 (2009): 710. 이 말은 호주 영화 비평가인 리차드 레너드(Richard Leonard)가 언급했던 말이기도 한데, 사실은 영화가 만들어지기 이전, 역사학자인 피터 리드가 처음 사용한 어휘이다. "도둑맞은 세대"는 백인화 교육을 위해 원주민 부모와 헤어져 강제 수용을 당했던 원주민 혼혈아들을 가리킨다. 2008년 오스트레일리아의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수상 케빈 러드(Kevin Rudd)는 이들 애버리지니(Aborigine) 후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다.

3) Gordon Greenwood, *Australia : A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Hong Kong: Agnus & Robertson Publishers, 1978), 192-193: 6개 지역은 New South Wales, Queensland, Victoria, Tasmania, Western Australia, South Australia이다.

4) Graeme Davison, John Hirst, Stuart Macintyre, *The Oxford Companion to Australian History* (Melbourne: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243-244; 영연방의 형성에 대해서는 이영석, 「제국의 유산-'영연방'의 과거와 현재, 1880-2000」, 『영국 연구』 25 (2011), 235-263을 참고.

만들기 위해 이 헌장을 통과시켰고, 이를 계기로 영국 의회와의 종속적 연결에서 거의 벗어나게 되었다.[5] 하지만, 완전한 독립적 주권국이 된 것은 1986년 영국 의회에서 오스트레일리아를 위해 입법에 대한 영국 의회 권력의 종결을 선언한, 소위 '오스트레일리아 법(Australia Act)'의 통과 이후이다.[6]

이처럼 오스트레일리아는 20세기의 과정을 걸치며 독립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20세기 이전, 영국인들의 오스트레일리아 식민 정착 시기에는 '애보리지니(Aborigine)'라고 불린 원주민들의 저항 및 영국 개척자들의 보복이 반복되고 있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해 오는데 대해 이주민의 집을 포위하고 이주민과 목축 종사자들을 원시적인 무기나 몽둥이로 때려죽이거나 개척자들의 시신을 절단하는 등의 저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이주민들은 독약을 담은 밀가루를 공급하거나, 병균이 있는 담요 등을 살포하여 학살하는 보복을 행하였다. 특히,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에서는 조직적인 '인간 사냥'이라고까지 불린, 원주민들을 야생 동물들처럼 살해하는 악명 높은 일까지 자행되었다. 이러한 원주민과의 전쟁은 1840년대까지 지속되었고, 일부 북부 지역에서는 19세기 말까지도 계속되었다.[7] 20세기에 들어서도 이 같은 원주민에 대한 적대 행위는 여전히

---

5) 웨스트민스터 법은 법률로 영국 정부가 임명하는 총독 하에 자치 정부를 갖는 해외자치령을 인정한 것이다. 자치령들은 대내외 독립적 권한을 행할 수 있고 외교권을 갖으며, 자치령 주민들은 영국 본국과 왕에 충성으로 단결하는 본국 국민과 평등한 공동체로 규정되었다. 실질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정부가 웨스트민스터 법령을 비준한 것은 영국에 대한 식민지로서의 복종을 종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http://libproxy.sogang.ac.kr/69acb8d/_Lib_Proxy_Url/global.britannica.com/EBchecked/topic/641050/Statute-of-Westminster (검색일: 2015년 4월 23일); F.G. Clarke, 260, 297.

6)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olidated Acts," 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 (검색일: 2015년 4월 20일); "Australia Act 1986," Austral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Retrieved 17 June, 2010.

7) F.G. Clarke, 『호주의 역사: 유형지에서 공화국 전야까지』(*Australia: A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1992), 임찬빈 옮김 (서울: 나남 출판, 1995), 122-123; Manning Clark, 『오스트레일리아의 역사』(*A Short History of Australia*), 최양희, 문우상 공역 (서울: 을유문화사, 1990), 79, 102-104; 때로는 원주민에게 술을 먹여 서로 싸움질을 하게하고는 서로 찢어 죽이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했다.

다른 방식으로 연장되고 있었다. 남아있던 원주민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거나, 선거 의견 표시라는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헌법으로 국가의 인구센서스에서 배제하였던 것이다.[8] 더욱이 1939년에는 원주민 동화정책(New Deal for Aborigines)이라는 정부 공식 정책으로 원주민 후손들을 차별하기까지 하였다. 원주민 동화정책의 공식적 명목은 '시민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추구하면서 원주민들의 '지위를 향상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문명화'라는 구실로 혼혈아나 애보리지니 아동들을 백인 가정에 강제 입양시키거나 공동서식과 같은 장치로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혼혈아들을 강제적으로 분리 차별하였다. 그럼으로써 '도둑맞은 세대'의 시민권리를 부정하고 그들의 문화를 제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9]

이 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는 인종적 순수성의 유지를 위한 1903년의 백호주의 정책(White Australia Policy)의 근간이 된 1901년 이민제한법(Immigration Restriction Act)으로 타인종의 유입 이민을 제한하였고, 혼인의 통제 및 혼혈인종에 대한 차별을 공적으로 승인하였다. 예를 들어, 1897년 식민청(Colonial Office)은 타인종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표면상 외국인 이민자들을 위해 어떤 유럽 언어로든 무차별 받아쓰기 시험을 실행하였는데, 이민국 관료들은 단지 시험을 떨어트릴 수 있는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문제로 선택하여 이들의 이민을 차단하였다. 이 시험은 1901년의 이민제한법 공표에 기초가 되었는데, 이때 아시안계 이민자들은 심지어 무시되기까지 하였다.[10] 사실, 이러한 법과 정책들은 순수 영국인 혈통의 유지와 백인 문화 지속이라는 명분을 공식화하는 것이었다. 특히, 인종적 순수함의 유지 및 계몽된 자립 공동체로서의 정서 배양을 위해 1903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채택한 백호주의는 백인인종을 통한 오스트레일리아의 통합이 근거했던 사고가 무엇이었는가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

8) Stuart Macintyre, *Cambridge Concise Histories: A Concise History of Austral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44.

9) Macintyre,145, 186-187.

10) *Ibid.*, 142; R.A. Huttenback, Racism and Empire: White Settlers and Colored Immigrations in the British Self-Governing Colonies, 1830-1910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6), 25-50.

> 오스트레일리아의 통일은 통합된 인종을 함축하지 않는 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통합된 인종은 그 구성원들이 섞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혼할 수 있어야 하고, 어느 쪽도 비하되지 않고 유대를 맺을 수 있어야 하며, 같은 이상을 향한 염원과 같은 사고로 고무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주조된 같은 특성, 사고, 어조 --- 등등을 지닌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영제국의 옹호를 위해 제국적 정서뿐만 아니라 민족적 정서에 그 기초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역사는 국가적 정책으로 백인 이외의 타인종을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맥킨타이어(Macintyre)가 언급한 것처럼, "백인들만의 '이상 국가'인 커먼웰스(the Commonwealth)라는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인종주의적 의식을 관찰하게 한다고 할 것이다.[11]

그렇다면, 이 같은 20세기 오스트레일리아의 인종주의적 정책의 근간에 있는 사고는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가? 본고는 제국주의의 확산과 함께 확장되었던 백인의 문명화라는 사고와 함께 20세기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쳤던 우생학 관점의 기존 연구 해석[12]과는 다른 방향에서 바로 이 질문을 던져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원주민이라는 식민지 내부의

11) *Ibid.*, 142-143: Macintyre는 백호주의가 이상화한 국가인 커먼웰스(the Commonwealth)의 필수 조건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12) 이에 대한 연구로는 Patrick Petitjean and Catherine Jami and Anne Marie Moulin, *Science and Empires : Historical Studies about Scientific Development and European Expansion* (Dorde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2); Lucy Bland, "British Eugenics and 'Race-Crossing': a Study of an Interwar Investigation," *New Formations* 60 (2007), 66-78; Dan Stone, "Race in British Eugenics," *European History Quarterly* 31, no.3 (2001), 113-157; Douglas M. Peers, "British Imperialism and the Dynamics of Race, Gender, and Class in the Long Nineteenth Century," *Radical Historical Reviews* 71 (1998), 164-181; Laura Briggs, *Reproducing Empire: Race, Sex, Science, and U.S. Imperialism in Puerto Ric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Anna Davin, "Imperialism and Motherhood," *History Workshop Journal* (1978), 9-66; 국내연구로는 서종희, 「우생학적 생명정치가 혼인법, 이혼법, 불임법(단종법) 등에 미친 영향 : 20세기 초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4, no.39 (2010), 331-362; 김호연, 「19세기 말 영국 우생학의 탄생과 사회적 영향 : 국가적 효율과 우생학적 건강」, 『이화사학연구』 36 (2008), 233-259 등이 있다.

타자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형성과정에서 유입된 외부적 타자인 타인종 이주민과의 관계, 그리고 영국인 이주 정착민들 사이의 관계에 그 뿌리는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틀에서 본고는 영국 자치령 오스트레일리아로의 영국인들의 이주 오스트레일리아 정착 과정과 영국 자치령 이주 역사 속의 정착민들의 삶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오스트레일리아 형성의 역사에서 영국인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만이 있었는지, 식민지 시기로부터 연계된 정착민들의 삶에서는 갈등적 요소가 없었는지를 관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착민들의 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백호주의를 가져오게 한 19세기 자치령에서의 제국의 잔재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누가 오스트레일리아를 건설하였는가?: 영제국 식민지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착민들

엘리자베스 시대부터 영국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유형의 사람들에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비렁뱅이 노릇을 하는 걸인들을 포함시켜 이들을 국외로 추방하는 형을 선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독립전쟁에서의 패배로 13개주의 미국 식민지를 잃게 되자, 마땅한 죄수 유형지를 찾아야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18세기 말까지 낡은 배들을 감옥선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감옥선의 운영은 테임즈(Thames)나 포츠머스(Postsmouth), 플라이머스(Plymouth) 등에 선박을 정박시켜 놓고 죄수들을 가두는 방식이었는데, 죄수들을 낮에는 항만 건설 작업 등의 공사에 투입하고 밤에는 다시 감옥선으로 보내는 식이었다. 하지만, 점점 죄수들의 수가 늘어가면서 전염병 등의 발생 때문에 사회불안 야기 가능성이 증가하자, 영국 정부는 이들을 다시 영국 밖으로 추방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프랑스와 네덜란드, 스페인의 대외적인 위협이 영제국 건설의 전략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중간 기지로서 오스트레일리아를 적합한 식민지로 부상시키게 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시아에서 유럽 국가로부터 영국의 식민지 소유권 방어뿐만 아니라 인도양에서 영국 선박에 유용한 물자를

공급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13]

사실, 영국인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 다양한 원주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륙의 주인이나 소유권을 가진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오스트레일리아란 곳은 누구든 차지할 수 있는 개방된 땅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사고는 영국 전함이 뉴 사우스 웨일즈에 도착한 해인 1788년, 무력 충돌 없이 죄수 유배지이면서 또 자유민 개척지로 오스트레일리아를 영국의 식민지로 공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 시기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영국인 정착민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 때였다.[14]

첫 영국인 이주자들이 뉴 사우스 웨일즈에 발을 내디딘 이후로 투자 자본을 가진 개척 자유민들의 오스트레일리아 이민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영국 사회 관행상 토지 소유는 사회적 권위와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넓은 토지 소유와 거대 목축업가라는 미래의 청사진이 개척자들을 식민지로 이끌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민 장려로 인해 퇴직 장교들뿐만 아니라 자유노동자, 스코틀랜드의 소작인이나 아일랜드의 가난한 농부 출신 이민자들이 부유한 자작농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 이들과 더불어 19세기 전반까지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총독을 비롯해 군부 지배계층, 치안 판사, 투자 자유민, 상인들과 같은 부유한 정착민들의 집단도 형성되었다. 이들은 목장 경영과 양모 수출 및 고래, 물개 가죽, 식민지 산물들로 무역 사업을 전개해 나가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해 나갔다.[15] 그리하여 형기를 마친 '유형수출신 정착민(Emancipist)'들,

---

13) F.G. Clarke, 32, 53-56. 클라크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스페인 기지 공격을 위한 기지와 해군이 물자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항구건설 작업에 죄수들의 유형이 동반되었다고 보고 있다.

14) *Ibid.*, 51, 59-62. 이는 클라크가 언급했던 것처럼, 영국인들이 원주민들을 단지 유목민과 같은 단기 '표면 거주자'로 간주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함대에는 443명의 선원과 568명의 남자죄수, 191명의 여자죄수(어린이 13명 동반), 해병 160명, 장교와 군속 51명, 군인의 배우자 27명(19명의 어린이 동반), 총독의 개인 참모 9명 등이 승선했다. 1788년 뉴 사우스 웨일즈의 보타니 만(Boatany Bay)에 도착한 후, 다시 잭슨 항(Port Jackson)으로 이동하여 1월 26일 영국국기 게양을 하고 뉴 사우스 웨일즈가 식민지가 된 것을 기념하는 축포를 올렸다. 1월 26일은 지금 호주의 건국일로 되어 있다.

15) M. Clark, 53, 55, 65.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태생인들(Currency Lads)’이 자유 이민자들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아의 인구 증가를 만들고 있었다.[16] 그렇다면 초기 식민지 사회는 자유 공존 사회였는가?

사실, 영제국 식민지 오스트레일리아 초기에는 유형기간이 끝난 전과자들에게 가축과 함께 토지가 불하되고 2년간의 양식이 주어졌다. 그러나 투자 개척민들이 유입되면서 식민지 사회 기득권층이 형성되어 가자, 기득권층은 점차 이 토지 불하 제도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1825년 이후부터는 전과자가 최소 20파운드 자본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토지 불하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였고, 결국에는 죄수 갱생을 장려하는 이 토지 불하 제도를 폐지하였다.[17] 이는 유형수 출신 정착민들의 경제·사회 · 정치적 회생의 길을 막는 것이었고, 죄수들을 품팔이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처럼 식민지의 상류층을 형성하고자 한 정착민 기득권층은 자신들이 투자한 식민지 토지와 농장 건설에 죄수 노동력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죄수들뿐만 아니라 자신들 이외의 다수의 식민지인들 및 죄수 후손들을 자신들과 엄격히 구분하고자 하였다. 식민지 오스트레일리아 사회를 거대 농장과 토지를 가진 유력 귀족 계급 또는 특권 계급의 형성으로 본국과 유사한 계급 구조의 창출을 유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죄수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낙오집단인 자신들의 집단 구성체 내에서 ‘모두가 같다’는 평등 의식을 형성하고 있던 반면, 기득권층에서는 다른 분리 의식이 형성되고 있었다. 바로 형기를 마친 죄수들은 “죄수 과거를 가진 영원히 도덕적으로 열등한 계층”으로, 식민지인은 “오염된 사람,” “타락한 본토 태생,” 또는 “영국인이 아닌 오스트레일리아인”으로 생각하는 편견을

16) Greenwood, 46; M. Clark, 55, 81, 91: : 1819년 뉴 사우스 웨일즈의 인구는 2만 6천여 명에 달했으며, 멜버른의 경우, 1840년에 이르면 이미 1만 명 이상의 거주자들이 사는 곳이 되었다. 그리하여 1820년대 3만이던 식민지 인구는 1830년대에는 6만이 되었고, 1840년에 이르면 16만, 1850년엔 40만이 되었다; F.G. Clarke, p.90; Peter Miller Cunningham, *Two Years in New South Wales: A Series of Letters,* vol. II, (London: Henry Colburn, 1827), 53, Accessed 2 March, 2014: ‘Currency Lads’는 유형 식민지 시대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 오스트레일리아 태생인들을 가리키는 구식명칭이다. 본고에서는 이맨시피스트들은 ‘유형수출신 정착민,’ 커런시 래즈는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태생인들’로 칭하도록 하겠다.

17) F.G. Clarke, 94.

확산시켜 가고 있었던 것이다.[18]

이와 같이 영국인 이주민 기득권층 사회에서는 형기 만료자와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태생인들을 차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지만, 유형수출신 정착민들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인들 사이에서는 '대륙에서 출생한 자와 개척을 담당한 죄수들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이들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유형식민지이기에 때문에 식민지에 먼저 정착한 자신들이 식민지 발전과 소유권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19]

> 우리는 이 국가의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과격하고 불쾌하며 잘못된 공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들의 후손들은 필연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인 호주의 주인이 될 것이다.[20]

1826년의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유형수출신 정착민들은 오스트레일리아가 그들과 자신들의 후손에게 속하는 것이지 이민자들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오스트레일리아 정착민 사회에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를 확보해야 했던 유형수 출신 정착민들이 자유 이민자 기득권층의 상류 사회 독점에 대해 반감을 가지며 대립각을 이루고 있었다.[21] 한 예로 이러한 대립은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태생인들과 기득권층 자녀들, 그리고 죄수 및 자유 이주민들의 후손들에 적합한 교육 문제를 논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에 존재하는 '유해한 죄수들의 영향과 오염된 식민지인의 혈통을 교육으로 교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과 편견이 교차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죄수나 죄수의 아이는 자유시민이 될 수 없으며 제 3세대까지 가더라도 그들 후손들은

18) M. Clark, 63, 132; F.G. Clarke, 94, 96-97, 102.
19) F.G. Clarke,97; M. Clark, 59.
20) Robert Howe, *The Sydney Gazette*, 18 July, (1826); F.G. Clarke, 103에서 인용.
21) M. Clark, 65-66, 74; F.G. Clarke, 109.

식민지에서 명예직이나 관직에 등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고까지 대두되고 있었다. 이러한 의식은 공정한 기회와 종교적 특권의 옹호 없는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교육정책을 방해하는 것이기도 했다.[22] 이 같은 오스트레일리아 내부 영국인들 사이에서의 타자 의식은 서로 배척의 벽을 만들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분위기는 어떻게 점차 '영제국의 오스트레일리아인'이라는 의식으로 합체되어 가게 되었는가?

3. 영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정착민들의 새로운 관계 및 변화들

1820년대 후반에서 1830대 식민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목축업의 확장과 자유노동자 이민의 증가와 더불어 영국의 농업 식민지로서 자유식민지 지역건설이 더욱 확장되어 갔다. 이는 영국 정부가 중산층의 폭넓은 투자를 유인하여 자본금에 비례한 식민지 땅 불하 정책을 채택하면서 가속화 되었다. 사실 이 같은 영국 자산가들에게 오스트레일리아로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의 실행은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영국 정부의 계산이 존재하고 있었다. 바로 자산가들의 이민으로 본토의 인구증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식민지 사회건설 및 식민지 사회 도덕성의 개선이라는 이익이었다. 또한, 이민 자산가들이 목축업과 농업으로 죄수 노동력을 흡수하면, 죄수 유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었다.[23]

이 같은 식민지 확장과 투자 이민 장려는 더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식민지 사회에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타인종 이주 노동자들이라는 또

22) F.G. Clarke, 125-126.

23) Paul Hudson, "English Emigration to New Zealand, 1839-1850: Information Diffusion and Marketing A New World," *Economic History Review*, LIV, 4 (2001), 681; F.G. Clarke, 101, 109; M. Clark, 65. 그리하여 19세기 중엽에는 이민자들의 편지나 영국 신문들 및 이민협회들의 광고에서 자본가들과 좋은 가문의 사람들의 이민을 독려하는 기사를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특히, 식민지의 남초 현상으로 인해 여성 이민을 독려하는 기사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 노동자 계급의 이민뿐만 아니라 중간 계급의 여성 이민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이민경, 「빅토리아 중기 여성 이민담론을 통해본 영국 식민지로의 여성 이민」, 『영국연구』 32 (2014), 138-139를 참고.

다른 타자를 만들게 하였다. 스코틀랜드인, 아일랜드인들의 노동력에서 더 나아가 인도 및 남태평양 섬들에서 유입된 타인종 노동자들을 증가하게 하였기 때문이다.[24] 예를 들면, 19세기 중엽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유럽인들이 열대지역 노동자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식민지의 설탕 농장과 같은 곳에 노동력 수급 용도로 남태평양 섬 출신의 '카나카스(Kanakas)'로 불리는 농장 노동자들을 계약 노동자로 불러들이는 일이 잦았다.[25] 더욱이 1851년 금광의 발견은 각국의 사람들을 오스트레일리아로 몰려들게 하면서 외부로부터의 타인종 유입 이주민들을 증가시키고 있었다.[26] 이는 잉글랜드인, 스코틀랜드인, 아일랜드인이라는 영국인 내부적 타자나 원주민과는 또 다른 외부적 타인종 타자에 대한 대립의식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금광의 발견과 생산이 유형지로서의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져온 경제적 발전처럼 많은 수의 다양한 타자들의 유입 또한 식민지에 새로운 다른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먼저, 오스트레일리아 내부 영국인 정착민들 사이의 분리를 통합하게 하는 변화의 기류를 만들고 있었다. 그 출발은 우선, 금광지역에서의 죄수 노동력 사용이 옳지 않다는 의견의 출현과 '식민지 발전을 위해 죄수 노동력이 필수'라는 생각들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자본을 축적하게 된 이주 정착민들 및 기득권층으로 하여금 '자유 이민자들의 수용이 투자 이민의 증가와 식민지에 사회 · 도덕적으로 이로운 기반을 형성할 것'이라는 사고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오스트레일리아 정착민 사회에 유형수 수송 중단을 영국 정부에 표명하게 하였고, 결국 영국 정부로 하여금 1853년 오스트레일리아

24) M. Clark, 91-92, F.G. Clarke, 117.

25) F.G. Clarke, 154-155. 이후로 남태평양 주민에 대한 열대 노동력 의존도는 19세기 후반까지도 지속되었다.

26) Greenwood, 98-99. 금광 발견으로 인해 1851년에 43만 7천명이었던 인구가 1861년에는 1백16만8천명이 될 정도가 되었다.

동부로의 유형수 수송 폐지 발표를 하게 하였다.[27] 이는 식민지에서의 우수한 영국인종 확산을 위한 필요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부유한 유형수 출신 정착민이나 자유 이민자들 모두 영국 정부의 국유지 매각과 이민법 그리고 죄수 유형에 대항하는 '공동의 이익'이란 관점을 형성하게 하는 변화를 일게 하였다. 이는 이전에 분리되었던 오스트레일리아 사회 각각의 집단들이 서로의 의견들을 점차 수렴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었다.[28]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목축업이나 식민지 산물의 수출 또는 금광으로 인해 자산을 증식한 사람들로 하여금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새로운 땅에서는 누구나 특권을 가졌다'는 믿음을 형성하게 하였다. 특히, 내륙 노동자들이나 금광부들은 동료의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같은 조건을 가진 평등한 관계라는 의식, 또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결과물에 의해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는 사고를 형성하게 하고 있었다. 권리로서의 '공평한 대우'라는 의식을 가져오고 있었던 것이다.[29]

한편, 이민자들 가운데 잉글랜드 출신, 스코틀랜드 출신, 아일랜드 출신에서 오는 영국국교회 및 신교파와 가톨릭교의 신앙적 대립에 의한 충돌의 와해 과정도 진행되고 있었다.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들에 대해서 '식민지 사회의 수준 격하와 정신적 타락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던 영국국교회와 신교도들에 대립해 잉글랜드인들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던 아일랜드 가톨릭교도들의 반목이 점차 해결되는 조짐이 일게 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가톨릭 및 장로교, 침례교 등의 신교도들이 영국국교회가 교육을 독점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고, 각 종파가 서로의 학교를 각기 구역에 설립하여 성경을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대립하였었다. 또 이러한 각 종파의 주장은 정착민들의 이세에 대한

27) Greenwood, 98-99; F.G. Clarke, 131; M. Clark, 131-132, 143; Marjory Harper and Stephen Constantine, *Migration and Empi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44. 이 과정에서 유배형 죄수제도와 노예제도의 폐단이 연결되기도 하였다. 이후 오스트레일리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점차 죄수 수송이 감소하다 1868년 중지하게 되었다.

28) M. Clark, 107.

29) F.G. Clarke, 97; M. Clark, 124-125.

첨예한 교육관의 차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펼쳐지는 경우가 많았다.[30] 하지만, 이 같은 영국인 내부의 종교적 편견에 따른 타자 의식과 이견들은 통합된 영제국의 오스트레일리아인 배양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의를 가져오는 해결책들로 개선되어 나갔다. 대표적으로 '비종교적 교육' 형태의 도입[31], 이에 따른 보통교육과 국립 학교제도의 설립, 종파가 아닌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일반교육'의 실시와 '종파별 대표를 포함하지 않는 교육부 설치' 등을 들 수 있다.[32] 결국 이러한 오스트레일리아 자치령 정부의 노력은 식민지에서의 분리된 영국인들에서 응집된 영국인들로 집결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영국인 정착민 내부의 통합의 흐름과는 달리, 타국 노동자들의 유입, 그리고 이를 통한 다양한 자본가들의 증가는 무엇보다 영국인 정치가와 시사평론가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국인들로 하여금 호주인의 혈통 오염에 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었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 사회 내 영국인종과 타인종이라는 두 개의 대립각으로 정리되는 타자의 통합 과정 또한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비율로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1861년경까지 오스트레일리아 정착지역 인구는 1백 24만 9천명에 달하게 되었고, 이 가운데 52%가 해외 출생자라는 사실이 이를 말해 주고 있었다. 더욱이 이 가운데 6십 1만 2천 531명이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로 유입된 타인종에 대한 영국인의 편견은 점차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33] 이러한 의식은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 유색인종을 데려오는 것은 장래를 생각지 않고 현재만을 생각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나는 생각한다 --- 우리들은 아프리카 인들을

30) F.G. Clarke,125; M. Clark, 93-94, 105-106.

31) M. Clark, 93-94.

32) *Ibid.*, 106, 113-115: 즉, 특정 종파에 치우치지 않은 '기독교 윤리에 입각한 도덕교육,' 또 '각 종파의 교사에게 똑같은 기회 부여'와 같은 방침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종교의 신봉과 관계없이 서로 사랑하고 자비심을 베푸는 인간이 되도록" 교육하자는 사고도 발흥되었다.

33) Macintyre, 77; F.G. Clarke, 131; Harper, 41.

> 데리고 와서 북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한 우리들의 조상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위를 후회한다.[34]

이처럼 오스트레일리아의 기득권층이건, 노동자들이건, 직업이나 계급에 관계없이 식민지 오스트레일리아에 유입되고 있는 유색인종 노동력에 대해 영국인 정착민들은 위협에 가까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바로 '유색인종과 혼혈하게 되면 고유한 영국인종의 품위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며, 노동력의 수요 증가로 인한 남태평양이나 인도, 중국 등지의 노동자들의 유입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도덕적 저하'를 의미한다는 등의 인식의 형성이었다.[35]

Punch Cartoon, 2 June, 1888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1888년 영국의 잡지 펀치(Punch)에 실린 다음의 만화이다. 이 만화는 아시아인들의 이민에 대항하면서 '배제'를 강화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회담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 시기 즈음 금광으로 유입되는 유색인종들에 대한 반대로 오스트레일리아 내 금광들과 브리즈번(Brisbane) 등지에서는 큰 폭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오스트레일리아 내부 식민지역들은 회의를 열어 아시아인들의 이민에 반대하는 조직화한 대항과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 만화에 삽입되어 있는 말처럼, 당시

34) M. Clark, 116. 이는 1847년의 영국 식민지성의 장관 제임스 스테판(James Stephen)이 목축 사업에 뛰어났던 인도인 노동자를 데려오자는 스퀴터(Squatter)들의 제안에 반대 각서를 쓴 것이었다. 스퀴터는 영국 국유지를 차용하여 방목 사업을 했던 집단으로 처음에는 '쓸모없는 땅'을 개척한 죄수들을 폄하하는 말로 쓰였다, 이들 가운데 후에 점차 빠르게 자산을 갖는 자들이 생기게 되면서, 또 투자 이민이 증가하면서 방목 사업을 통해 부를 형성한 부유한 집단인 스퀴토크라시(squattocracy)도 형성되게 되었다.

35) *Ibid.,* 115-116.

오스트레일리아 사회가 다른 인종의 노동자들의 유입 이민에 대해 상당한 적개심을 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밖으로! 당신들은 밖에 있으십시오!
> 나는[오스트레일리아는] 당신들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 사업으로라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36]

그리하여 오스트레일리아의 기존 정착민들은 자신들은 영국인 또는 백인 유럽인이거나 그들의 후손들이라는 식으로 타인종 노동자들 및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인종적 편견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결국 오스트레일리아의 영국인 정착민들이 영제국의 일부로서 오스트레일리아를 건설하였던 '영국인'이라는 의식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된 배경을 관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서두에서 언급한 원주민이라는 타자뿐만 아니라 타국의 이주자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타민족 및 타인종으로부터 후대의 오스트레일리아가 백인의 국가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백호주의' 의식으로 연결되게 되는 사고의 행보를 엿보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자치령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제국의 산물들

살펴본 바와 같이, 제국주의 경쟁에 있어 국제적 권력 면에서 영국의 지위에 대한 위협과 군사기지 건설 및 죄수 유배지의 필요성 등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식민지 건설을 유도하였다. 이후로 오스트레일리아 내부의 식민지 확장 및 건설에 필요한 인력 자본의 형성과정에서 영국인들의 자유 이민이 유도되었다. 그것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지리학적으로 아시아와 가까웠고, 또한 프랑스나 네덜란드에 의해 획득되어서는 안 되었던 '영국인들의 땅'이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영국인 이주민들의 이식과 확장이 없으면 소멸 한다'는 오랜 동안 지속된

36) P.J. Marshall, (ed.), *Cambridge Illustrated History of the British Emp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276. 만화의 아래에 삽입되어 있는 원문은 "Outside, Sir! Outside! I've had quite enough of you! No admittance, not even on business!"이다.

타자의 위협에 대한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방책이기도 했다. 인구학적으로도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으로 통합되는 제국의 영토이어야 했기 때문이다.[37]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로 들어온 초기 영국인 정착민들은 원주민뿐만 아니라 유형이 끝난 죄수들, 즉, 유형수 출신 정착민들과 공존해야 했기에 정착 과정에서 영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사회적 구분이 식민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길 구하였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영국 사회에서 계층적 사회 지위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었던 토지에 중요성을 부가하면서 이것이 식민지 사회에서도 사회 경제적 지위 확보의 토대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영국에서 도시 거주자였던 자유 노동이민자들까지도 목축업 노동자가 되기보다는 작은 땅이라도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소규모 농장경영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식민지 정착민 기득권층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에 내재되어 있는 영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를 영속시키는 '신사계급의 창출'을 만들려는 의지로 나타나고 있었다.[38]

특히, 이들은 노동력으로 유형 죄수들이 사용되고 있던 식민지 사회가 영국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보다 더 나은 계층에 대한 존경심과 복종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유형수 출신 정착민들 또는 내륙 노동자들 사이에 형성되어 갔던 '평등주의는 위험한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39] 이와 같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계급 구분의 유지를 추구하는 사고는 후기 빅토리아 시기까지도 이민정책의 필수불가결한 양상으로 지속되곤 하였다.[40]
하지만, 이 같은 사고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자신들의 부모세대들이

37) Harper, 41-42. 이는 1901년 커먼웰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의 형성 이후에도 해외 출생자가 단지 2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8) F.G Clarke, 96, 114, 155.

39) *Ibid.*, 114.

40) Alison Leah Pion, "Exporting "Race" to the Colonies: British Emigration Initiatives in the Late-Nineteenth Century" (Ph.D. diss. Northwestern University, 2004), 76. 피온은 이민 협회나 해외 식민지 사업가들이 영국 식민제국에서 계급 구별에 대한 종결을 호소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구어 이룩했다고 생각하던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태생인들에게는 일반 자유 이민자들에 대한 배타심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결국, 타지 출신자들에 대해 호의보다는 반감을 증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도 했다.[41] 자신들의 노력과는 달리 양호한 토지 소유의 기회 상실과 후손에의 토지 상속권에 대한 장애물이 그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20세기에 공개적으로 나타난 백호주의에서 타인종을 제한하려는 사고의 뿌리를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던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의 도덕적 갱생과 죄수 유지비의 절약이라는 이면적 이유와 더불어 오스트레일리아로의 투자 이민 및 노동자들의 이민 증가[42]는 오스트레일리아 방목 사업에 종사하였던 영국인들에 대한 도덕적 퇴보에 관한 우려를 점차 증가시켰다. 그리하여 1830년대에서 1840년대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에서 농업 대신 방목 사업에 치중하게 된다면 '몇 세대 안에 영국인 정착민들이 야만인과 같은 종족' 될 것이라는 의식까지 생겨나고 있었다.[43] 그것은 영국인 자신들이 미개척지였던 오스트레일리아를 무단 점유했다는 사실에 대한 죄의식의 투사였다고도 볼 수 있고, 이 지역에서의 원주민 살해 및 혼혈의 가능성으로 인한 도덕적 타락에 대한 사회적 근심의 발현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타인종 노동자들 및 투자 이민자들의 증가를 가져왔던 금광의 발견으로 인한 식민지 사회의 자산적 가치의 증가는 정착민 사회에 새로운 종류의 편견인 인종 생존, 민족적 우월성에 대한

41) M. Clark, 65.

42) 물론, 이러한 이유들은 19세기 내내 증가하고 있던 영국 본토의 인구문제 및 과잉 노동시장 문제의 해결과 맞물리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민경, 『빅토리아 중기 여성들의 문필영역과 공적 출현: 랑엄 플레이스 서클(Langham Place Circle)』 (Ph.D. diss., 서강대학교, 2014), 37-39를 참고. 19세기 여성 이민에 관하여는 이민경, 「빅토리아 중기 여성 이민담론을 통해본 영국 식민지로의 여성 이민」, 133-167을 참고.

43) F.G. Clarke, *The Land of Contrarieties: British Attitudes to the Australian Colonies, 1828-1855*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1977), 120-144.

관념들을 유통하도록 하였다.[44] 먼저, 기독교 교회들 사이에서 영국국교회 잉글랜드인과 가톨릭 아일랜드인처럼 계층적 정체성과 영국인 가운데에서도 인종적 구별을 함축했던 종파적 분리의식과 지역적 차이가 변화를 겪었다. 이는 영국인의 인종 · 문화의 재배치라는 목적성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통합적 영국인이라는 가치를 형성하면서 영국인 내부의 인종적 통합의식을 만들어 내었다. 이 같은 의식은 논쟁이 많았던 정착민 이세들의 교육 정책에서 비종파적 교육 방식의 구현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같은 사고는 우월한 순수 영국 혈통 유지를 제국의 임무 가운데 위치하게 하면서 19세기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 영국 정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자치령 정치가들의 이민 정책에 영국인의 재생산과 영국 문화의 이식을 중심 가치로 부상시키도록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 이민자들의 선택 및 이송 그리고 재식민이라는 과정은 영국인들의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이민자들에 대한 적합성으로 '잉글랜드적'이고 앵글로 색슨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 가치로 판단하게 하였다.[45] 이로 인해 오스트레일리아의 영국인 정착민들은 자신의 모국 여성과 혼인하는 것이 가족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제국적 중요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타유럽인들 및 타인종의 영향력을 저하시키고 영국스러움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서두에서 언급한 영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타난 혼혈아 눌라가 격리 수용소에 보내지는 축약된 이야기의 근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측하게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영국인 정착민들이 마주쳐야 했던 원주민 및 타인종 이주민들의 유입이 오스트레일리아 정착민 사회의 기반 형성 과정에서 영국인종의 순수 혈통 유지를 위한 '영제국인들'이라는 사고를 더욱 강하게 형성하도록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 계급 보다는 영국인과 문화의 재생산적 기여로 제국의 인종적 블록을 건조하고 확장하는 오스트레일리아 내의 앵글로 색슨이라는 통합적 인종적 사고가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던

44)Pion, 56.

45)이민경, 「빅토리아 중기 여성 이민담론을 통해본 영국 식민지로의 여성 이민」, 13-17; Pion, 50, 77.

것이다. 그리하여 식민지 이민에 참여했던 영국의 병사들 및 기존의 영국인 정착민들, 자유 이주 노동자들, 남녀 이민자들이 모두 영제국의 확장 속에 새롭게 가치를 얻으며 인종, 국가, 제국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인종적 사고는 19세기 후반 출산의 통제 운동과 20세기 초 우생학의 확산과 합세하여 '백인들만의 이상적인 커먼웰스 오스트레일리아'를 만드는 기획을 마련해 가게 되었던 것이다.[46]

현재 우리 사회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과 여성 이민자들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정에서 본고에서 관찰한 오스트레일리아의 형성기 역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영화 <오스트레일리아>에서처럼, 타자의 땅에서 '주인 의식'을 드러내며 혼혈아들을 수용소에 격리시키고 애브오리진의 특성을 소멸시키고자 했던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인 정착민들의 인종적 집착에 의한 폐해가 우리의 현재에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듯이, 선조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후손들의 반성과 사죄의 표시인 '영화'라는 매체로 치유되기 힘든, 단지 그릇된 '이상'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확장된 '우리'라는 의식과 '포함하는 우리'의 미래가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서강대학교, minklee@sokang.ac.kr

---

46) Pion, 77, 106-107. 사실, 우생학은 영국에서 1883년 Francis Galton에 의해 고안되었고, 다윈의 진화론을 적용하여 '인종도 인위적 선택에 의해 개선할 수 있다는 인간 진화의 미래를 인간의 힘으로 일군다'는 과학을 근거로 가진 사고였다. 1900년 'Mendel의 유전학 재발견으로 급진전'하면서 20세기 전반기에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며 파급되었지만, 본고에서는 19세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Garver KL. and Garver B., "Eugenics: Past, Present, and the Future," *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 49 (1991), 1109-1118; 박희주, 「새로운 유전학과 우생학」, 『생명윤리』 vol. 1-2 (2000), 14-28; Kevin Laland and Gillian Brown, 『센스 앤 넌센스』(*Sense and Nonsense*), 양병찬 옮김 (서울: 동아시아, 2014); 박지현, 「양차대전의 생명담론과 프랑스 우생학」, 『서양사론』 no.100 (2009), 65-95; 염운옥, 「1899년-1906년 영국의 인종 퇴화론에 관한 연구 : 우생학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사총』 367-411; 김호연, 박희주, 「우생학에 대한 다층적 접근 : 유전, 환경 그리고 이념」, 『환경법연구』 27, no.2 (2005), 1-15를 참고.

주제어: 영제국 식민지(British Colony), 백호주의(White Australia Policy), 커먼웰스(Commonwealth Australia), 영국인의 정체성(British Identity), 인종주의(Racism)

(논문투고일: 2015년 5월 26일, 심사일: 6월 7일, 게재확정일: 6월 16일)

<국문초록>

식민지 이주 정착민과 영제국:
19세기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로

이 민 경

본고는 영국 자치령 오스트레일리아의 형성과 영국인 이주민들의 정착과정을 살펴보면서 정착민들의 삶과 의식의 변화를 통해 20세 초 '백호주의'와 같은 인종주의적 정책의 근간이 무엇이었는가를 고찰해 보고 있다. 초기 식민지 시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영국인 이주민들과 내부의 타자들인 원주민과의 투쟁뿐만 아니라 이주 정착민들 사이에서도 죄수들이나 유형이 끝난 정착민들, 그리고 이들의 후손들과 식민지 기득권층이 출신으로 인한 분리의식으로 대립 현상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19세기를 걸친 오스트레일리아의 발전 과정에서 외부의 타자들, 즉, 타인종 출신의 유입 이민자들이 증가하자, '영국인종', '영국문화의 수호' 더 나아가 '백인인종의 보존과 보호'라는 명목아래 자신들을 통합하는 의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타자들에 대한 배타적 반응 양상을 가져오게 되었고, 결국 20세기 오스트레일리아의 독립 국가 형성의 과정 속에서 타인종의 유입 이민 제한 및 차별 정책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관찰하게 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이주민들의 유입과 유출이 빈번한 글로벌 현대 시대에 타자들을 수용하고 포함시키는 '우리'를 생각해 보아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The Settlers on the British Colonies and the British Empire: With Special Reference of the 19th Century's Australia

Min-Kyoung LEE

This paper examines the formation of the Commonwealth Australia and the settlement process of the British focusing on the question of what brought the racist policies of Australia such as 'White Australia Policy.' In the beginning of the Colonial period, there was not only a struggle between the English and the Aborigins, but also a sense of separation between Emancipists, their descendants, (or colonial settlers of convicts) and the free settlers. Especially, the establishment at the continent of the period were in conflict with Emancipists. However, through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Australia during the 19th century, the increasing number of immigrants – namely 'others,' made unite British immigrants themselves with the concepts of 'British nation' and 'defender of the British culture,' by extension, 'th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Whites Caucasian'. And this type of idea brought their taking an unfriendly and exclusive response to the others. It finally makes us observe that this kind of practice would form the ground base for the discrimination, as well as the restriction of immigration of the different races in the national development of independent Australia during the 20th centur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us take the broad concept of "We" which includes and accepts others in an era of globalization when emigrants and immigrants are frequent, even here in Korea.

Homo Migrans Vol.12 (Jun. 2015): 47-74

논문

프랑스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본 프랑스 공화주의 이념의 적용

김 진 영

1. 머리말

이 글은 프랑스 공화주의와 프랑스 국적법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프랑스에서 공화주의는 프랑스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며, 국적법은 이러한 공화주의 이념을 토대로 프랑스인의 개념을 실제로 적용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공화주의와 국적법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프랑스의 공화주의 이념의 변화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프랑스의 고유한 가치이자 프랑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이념으로 간주된다.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에서 유래하고 있는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공화국의 이념에 동조하고 자발적 의사로 공동체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라면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는 관련 없이 공화국의 시민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제3공화국이 등장하며 단순히 '하나의 제도적 체제'(régime institutionnel)의 의미를 넘어 '하나의 정치 모델'(un modèle politique)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1], 공화주의의 전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며 프랑스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1) 홍태영,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 「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호 (2005), 60.

그렇다면 프랑스 공화주의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958년 제5공화국 헌법 제1조에서도 "프랑스는 하나의(une), 불가분의(indivisible), 종교중립적인(laïque), 민주적인(démocratique), 사회적인(sociale) 공화국(république)이다"고 명시하면서 프랑스 공화주의의 요소를 설명하고 있으며, 1980년대 프랑스에서 민족정체성 논란이 일었을 때 국가통합고위위원회[2](HCI, Haut Conseil à l'integration)에서는 다시 한 번 프랑스 공화국을 "프랑스는 하나의 불가분의 공화국(une République une et indivisible)이고, 종교중립적인 공화국(une République laïque)이며, 국민국가(État-Nation)이다"고 밝히며 프랑스 공화주의를 정의하였다.[3]

하지만 이와 같이 프랑스 공화주의에 대한 정의를 국가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주의에 대한 논쟁은 프랑스 공화국의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해 왔다. 사실 공화주의는 하나의 명확하고 불변한 원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프랑스 대혁명 시기 다양하고 때로는 상이한 혁명의 실험 요소들을 분류하고 취합한 복합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결국 프랑스 대혁명의 해석이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은 프랑스가 공화주의를 정의하고자 했던 시기와 상황, 당대 프랑스의 정치 및 사회적 문제, 여론 등에 따라 수많은 공화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대혁명 시기에 등장하고 언급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매 시대마다 프랑스가 처해 있던 상황에 맞게 발전해 왔었다.[4]

이러한 공화주의 이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프랑스

---

2) 국가통합고위위원회(HCI)는 1990년 정부의 이민문제에 관해 조언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이 위원회의 목적에 대해서, "통합은 모든 사회분야에서 모든 사람이 활발히 참여하고 사회결속이 보장되도록...문화적 특수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정의했다. 박단, 『프랑스: 공화국과 무슬림 이민자」, 『현대서양사회와 이주민』 (한성대출판부, 2009), 37

3) Haut Conseil à l'integration, *Pour un modèle français d'intégration*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90).

4) 김용우, 「프랑스 공화주의 – 전체주의를 넘어서」, 「프랑스사연구」 21호 (2009), 176

국적법이다. 프랑스 공화국 구성원의 자격과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국적법은 프랑스 공화주의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공화국을 구성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요소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의 자격 요소를 명시하고 공화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자와 될 수 없는 자를 구분하는 국적법의 기준은 공화국 이념의 근간인 공화주의에 있으며, 공화주의 이념이 한 개인에게 적용되어 가장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적법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자격과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법안이다. 그리고 국적법에는 한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국민들이 자신들의 공통 요소를 무엇으로 두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자신들과 타자를 구분하고 있는지가 나타난다. 국적법 개정이 나타나는 시기는 곧 국가가 자국민과 외국인을 새로운 기준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시기이다. 공화주의 이념을 정체성으로 두었던 프랑스는 항상 공화주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국적법을 개정해 왔다. 그러나 공화주의를 어떠한 배경과 상황 속에서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프랑스 국적법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등장했으며, 때로는 완전히 상반된 국적 제도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본고는 공화주의 이념이 실제 정치의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제3공화국 시기부터 오늘날의 프랑스에 이르는 시기 중 국적법 개정의 폭이 넓고 프랑스 국적 제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던 세 번의 국적법 제정을 분석하여 프랑스의 공화주의가 법 제정에 적용되는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다. 특히 이 세 시기는 프랑스 내에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며 프랑스인에 대한 이전과는 다른 정의와 구분을 필요로 하던 때였다. 1889년 국적법이 입안되던 19세기 말은 프랑스 내에 오래 전부터 정착해 왔던 외국 국적자의 문제가, 1927년 국적법이 제정된 전간기는 일자리를 찾아 온 유럽 출신의 이민자 문제가, 그리고 1993년 국적법이 제정되던 시기는 구식민지에서 이주해온 무슬림 집단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던 상황이었다.[5)]

이 세 시기 모두에서 공화주의는 국적법 개정의 핵심 이념으로 작용했고 새로운 국적법을 입안했던 정책가들은 모두 새 법안이 프랑스 공화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이 왕당파와 교회 세력에 맞서 공화주의를 처음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시기에 제정된 1889년 국적법과, 1차 대전을 경험한 프랑스가 새롭게 사회 구성원을 정의했던 1927년 국적법, 구 식민지 출신자들과의 프랑스 본국인 사이의 갈등으로 등장한 1993년 국적법은 모두 공화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이 법들이 실제로 프랑스인을 정의하고자 했던 방향과 결과는 모두 달랐다. 그리고 세 국적법은 당시 프랑스가 처해 있던 상황 속에서 프랑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국적법에 대한 분석은 프랑스의 공화주의가 하나의 고정불변의 이념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며, 실제로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당대 프랑스가 처해 있던 환경과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드러낼 것이다.

2. 1889년 국적법과 프랑스 거주 외국인 문제

보불전쟁의 패배로 인한 프랑스 제3공화국의 등장은 프랑스 대혁명이 낳은 공화주의 이념이 실제 프랑스의 정치 무대에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났

5) 제기한 세 가지 국적법의 원문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1889년 국적법에 대한 사료는 Louis Le Sueur, *La nationalité : commentaire de la loi du 26 juin 1889* (Paris: G. Pedone-Lauriel, 1890); Lucien Gérardin, *De l'acquisition de la Qualité de Francais par voie de déclaration : étude sur le bienfait de la loi* (Paris: Librairie de la société du recueil général des lois et des arrèts, 1896); Victor Leray, *La loi du 26 juin 1889 et la condition des étrangers: droit international privé* (Paris: F. Mas, 1891)를, 1927년 국적법의 원문은 *Loi sur la nationalité : Suivie des décrets et instructions relatifs à l'application de la loi du 10 août 1927* (Nancy: Bercer-levrault, 1927); *Comment devenir française? Loi du 10 août 1927 sur la nationalité* (Paris: Société générale d'immigration, 1927)을, 1993년 국적법과 관련된 자료는 프랑스 법무부(http://http://legifrance.gouv.fr/ 검색일자: 2015-05-25)의 *LOI n° 93-933 du 22 juillet 1993 réformant le droit de la nationalité*를 참고하였다.

다. 구체제 시기 군주의 지배를 통한 국가의 운영에 반대하고 국가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적 참여를 추구했던 대혁명의 정신은 왕정복고와 두 차례의 제정이 이어진 19세기 동안 실제 정치에 구현되지 못하고 하나의 정치적 논의와 이념으로만 이어져 오고 있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몰락한 제2제국을 대신하여 세워진 제3공화국에서 공화주의자들은 본격적으로 공화주의 이념에 따른 새로운 공화국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새로운 공화국을 세우는 작업은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루이 아돌프 티에르(Louis Adolphe Thiers)가 이끄는 임시정부 내에서는 새롭게 수립된 국가가 어떠한 체제로 구성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당시 공화주의자들은 프랑스 정계 내에서 다수를 구성하며 정국을 주도할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아직 왕당파와 오를레앙주의자들의 정치적 권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공화주의자들은 다양한 세력들 가운데 큰 충돌 없이 무난하게 수용할 수 있는 체제이자 프랑스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체제로 공화국 체제를 추천하는 방향으로 정국을 유도하였다. 공화주의자들 가운데서는 당시 프랑스의 상황을 극복하고 내외부의 적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혁명적 수단을 통한 독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급진주의자들도 존재하였지만, 공화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을 안심시키기 위해 레옹 강베타(Léon Gambetta)를 중심으로 한 공화주의자들은 제1, 2공화국이 보였던 급진성을 거부하고 공화국이 가지는 안정성과 공화주의가 가지는 포용성을 강조하며 '기회주의적(opportuniste)' 공화파로 활동하였다.[6] 이러한 기회주의적 공화파의 주장은 임시정부 내에서 새로운 국가의 정치체제로 인정받게 되었고 5년간의 논의 끝에 1875년에 이르러 제3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랜 논의 끝에 구성된 제3공화국은 공화국 체제에 대한 포괄적

6) 하지만 이 시기 등장한 기회주의적 공화파 역시 급진 공화파들이 가졌던 공화주의 이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실제 정치를 추진하는 방법에서 기회주의적 공화파는 급진 공화파와는 달리 그 방법을 온건하고 보수적으로 추진하였다. J. Grévy, *La République des opportunistes 1870-1885* (Paris: GF-Glammarion, 1998), 30.

법률을 통해 성립되지 못하고 최소한의 합의만으로 구성되었다. 여전히 정국을 주도한 것은 오를레앙주의자와 온건공화주의 세력이었으며, 본격적으로 공화주의자들이 공화국의 요소를 수립해 나간 것은 제3공화국이 안정되고 공화파가 선거에서 승리한 1870년대 후반부터였다.[7] 이 시기 이후부터 공화주의자들은 공화주의 이념에 따른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적인 법안을 제정해 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교육부장관이었던 쥘 페리(Jules Ferry)는 1882년 3월 28일 교육에 관한 법률을 통해 무상, 의무, 세속적 교육의 원칙을 확립하며 프랑스 국민을 공화국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8] 당시 교육은 교회가 주도하여 담당하고 있었는데, 공화주의자들은 국가 주도의 교육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공화주의 시민을 양성하여 프랑스 공화국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국가 주도의 교육제도를 통해 가톨릭 교회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왕당파의 기반을 제거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이러한 공화주의자들의 교육 개혁과 교회 권력 제거는 1905년 정교분리법으로 이어지며 승리하게 되었다.[9]

더 나아가 공화주의자들은 1884년 헌법 개정을 통해 공화주의를 프랑스의 핵심 요소로 제정하기에 이른다.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 형태는 개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며 공화주의가 프랑스의 유일한 정치 체제임을 확고히 하였으며, 왕당파와 보수주의자들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상

7) 홍태영,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민주주의의 형성(1789-1884)」, 450-451

8) 당시 교육부장관이었던 쥘 페리(Jules Ferry)는 페리 법이라 불리는 1882년 3월 28일 법으로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종교 교육을 배제함으로써 공립학교의 교육과정을 비종교화시켰고, 이어 1886년 10월 30일에는 고블레(Goblet) 법 제17조를 통해 "모든 형태의 공립학교에서 교육은 전적으로 세속교사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명시하면서 종교인의 공립교육을 금지하며 교육의 라이시테를 완성시켰다. 지규철, 「프랑스헌법에서의 라이시떼 원칙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10 (2009), 44

9) 이는 1905년 정교분리법의 제1조와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제1조는 "공화국은 양심의 자유를 보호한다. 공화국은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이하에서 규정하는 제한에만 따르고 자유로운 예배를 보장한다"고 하며 정치가 종교에 개입할 수 없음을, 그리고 제2조 제1항은 "공화국은 어떤 예배에 대해서도 공인을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보조금을 교부하지도 않는다"고 하며 정치가 종교를 지원할 수 없음을 밝혔다. David Thomson, *France: Empire and Republic, 1850-1940 - Historical Documents* (New York: Harper & Row, 1968), 246-247. *Law of December 9, 1905, concerning the Separation of the Churches and the States.*

원의 종신 의원 제도를 폐지하면서 공화주의자들의 의회 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였다.[10] 이렇듯 공화주의자들은 교육 제도의 개혁을 통해 프랑스 공화국의 시민을 양성하고 공화주의 정치 제도의 확립을 통해 자신들의 이념을 구체화해 나갔다.

1889년 국적법의 제정은 이러한 공화주의자들의 공화주의 사회 구현이라는 목적에 방점을 찍는 것이었다. 프랑스를 공화주의 시민의 사회로 만들고자 했던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은 교육과 정치에서 공화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프랑스 시민을 규정하는 조건으로 공화주의 이념을 적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기존의 프랑스 국적법은 1803년 나폴레옹 민법이 규정했던 프랑스인의 자격 요소를 그대로 유지한 채 19세기 말까지 적용되어 왔었으며,[11] 나폴레옹 민법은 국적의 기준을 출생에 두는 속인주의(jus sanguinis)를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속인주의 원칙은 공화국 내에서 공화주의의 교육을 받고 자란 시민들을 프랑스 국민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기존의 국적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프랑스 내에서 태어나 공화주의 교육을 받고 프랑스 공화국에 동조하는 시민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국적이 프랑스가 아니라면 그는 프랑스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공화주의를 거부하고 교회와 왕당파에 동조하면서 공화국을 떠나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그 부모가 프랑스인이라면 프랑스인의 권리를 인정받고 프랑스 국적을 보유할 수 있었다. 프랑스가 속인주의적 국적 제도를 유지하는 한 공화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공화주의 시민으로 구성된 프랑스를 만들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19세기 프랑스의 국적제도가 철저하게 속인주의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외국인의 귀화를 거의 허가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제3공화국 수립 이전까지 프랑스 내의 외국인들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거주허가권을 획득하여 프랑스 국민

10) 홍태영, 위의 논문, 452
11) *Code Civil*, article 8 (1804).

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12] 그렇기에 프랑스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프랑스에 정착하여 사실상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외국인의 자녀들은 프랑스에서 출생하여 프랑스 사회 내에서 생활하였으며, 이들은 프랑스 국적이 없을 뿐 그 외에는 프랑스인과 다를 것이 전혀 없었다. 실제로 1886년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112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 중 프랑스에서 출생하여 자란 외국인이 절반에 달했다.[13]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사회화된 공화국 시민이 프랑스 국적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은 공화주의자들이 반드시 개정해야 할 부분이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화주의자들은 프랑스 국적의 기준을 영토에 두는 속지주의(jus soli)를 강화하는 개정 국적법을 제정하였다. 기존의 나폴레옹 민법에 명기된 국적 조항의 수정을 통해 이루어진 1889년 국적법 개정은 프랑스인의 혈통을 가지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프랑스 영토 내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프랑스 국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랑스에서 공화주의 교육을 받고 사회화된 자들을 프랑스 국민으로 인정하기 위해 공화주의자들은 1851년 이미 도입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이중속지주의[14](double jus soli)를 강화하였다. 1889년에 개정된 민법 제8조 제3장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을 부모로 두고 프랑스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는 태생적으로 프랑스인"[15]임을 밝히며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민 3세대에게 자동으로 프랑스 국적을 부여했다. 또한 민법 제8조 제4장에서는 외국 출생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프랑스 출생의 외국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프랑스 국적 획득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프랑스 국적을 부여하면서 이민 2세대까지도 프랑스인으로

12) 이는 나폴레옹 민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13조는 "프랑스 내 거주에 대한 황제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들이 연속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하는 동안 시민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Code Civil*, article 13 (1804).

13) Patrick Weil, *Qu'est-ce qu'un Français?* 45.

14) 이중속지주의는 속지주의의 원칙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경우로, 이에 따르면 부 또는 모가 '프랑스에서' 출생했고 그 자녀도 '프랑스에서' 출생하면 출생과 더불어 자녀가 국적을 얻는다.

15) 법을 제정했던 1889년에는 아버지에 한해서 적용했지만, 1891년에는 어머니에게도 적용하면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프랑스 출신의 외국인일 경우 그 자녀는 프랑스 국적을 부여받게 되었다.

받아들이며 속지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였다.[16]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이 1889년 국적법을 통해 이민 2세대와 3세대를 프랑스 국민으로 포함시킨 것은 그들이 구상한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였다. 공화주의자들은 개인의 혈통과 관련 없이 프랑스 내에서 교육받고 사회화된 시민이라면 프랑스 문화와 문명에 동화된 시민이 된다고 간주하였고, 비록 프랑스인의 혈통을 가졌다 할지라도 프랑스 문화를 접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외국의 문화와 습관,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고 여겼다. 외국인 자녀가 프랑스식 교육을 모두 받고 성인이 된다면 그의 가족이 주는 영향력이 거의 사라지고 프랑스로의 사회화가 완수되어 완벽한 프랑스인이 된다고 믿었다.[17] 이 시기 공화주의자들은 공화국의 교육이 공화주의 시민을 기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자신감이 바로 1889년 국적법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화주의자들이 이민 2, 3세대에게 속지주의를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프랑스 국민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과는 달리 이민 1세대는 프랑스 국적자의 범위에서 배제되었다. 이민 1세대들은 오히려 기존의 프랑스 민법이 인정해 주었던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며 전보다 더 열악한 처우를 받았다. 1세대 이민자들은 1889년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5년 마다 주기적으로 거주허가증을 갱신 받아야 했으며, 거주지 신고가 의무화 되었고 특정 공직에 진출할 수 없게 되는 등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기도 했다.[18] 이들이 프랑스로 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차단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프랑스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자본을 가진 일부 외국인에게만 귀화가 허락

16) Louis Le Sueur, *La nationalité : commentaire de la loi du 26 juin 1889*, 5.

17) Lucien Gérardin, *De l'acquisition de la qualité de français par voie de déclaration : étude sur le bienfait de la loi* (Paris: L. Larose, 1896), 3,

18) Lucien Gérardin, *De l'acquisition de la qualité de français par voie de déclaration : étude sur le bienfait de la loi*, 21-23.

되었을 뿐이었다.[19]

이러한 1889년 국적법은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이 당시 프랑스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인 중 1세대 이민자와 2, 3세대 이민자를 구분하여 취급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화주의자들에게 1세대 이민자는 프랑스 공화주의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프랑스에 사회화될 수 없는 부류로 간주되었고, 이와는 반대로 2, 3세대 이민자들은 프랑스 공교육을 받고 사회화되어 공화주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보유한 사람들로 인정되었다. 이는 당시 프랑스의 공화주의가 사회 구성원에게 보편적인 공화주의를 적용하였다기보다는 프랑스 공화국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부류와 그렇지 못한 부류를 구분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아 프랑스로의 사회화가 가능하다고 간주된 자들만을 공화국의 일원으로 수용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의 공화주의자들이 1889년 국적법을 통해 속지주의를 강화한 이유에는 공화주의의 구현이라는 이념적인 요소 외에도 기존의 국적 제도로 인해 프랑스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과 관련된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 역시 반영되어 있었다. 거의 1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속인주의와 외국인의 자유로운 거주허가 제도는 보불전쟁 이후 프랑스가 징병제를 실시하면서 프랑스인의 큰 불만을 사게 되었다.[20] 군역의 의무를 가지는 자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남성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라 프랑스인과 다를 것이 없는 외국 국적자들

19) 국적법에서 프랑스가 귀화를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고 지정한 외국인은 프랑스 군대에서 복무한 자, 국가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을 가진 자, 유용한 발명품을 고안하거나 도입한 자, 프랑스 내에서 산업 시설을 확충한 자 등 프랑스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이었다. 1927년 국적법은 이러한 조건에 프랑스 학위를 취득한 자와 프랑스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성년이 되었을 때 프랑스에 거주하는 자를 추가하여, 귀화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 *Loi du 10 août 1927 sur la nationalité*, 27.

20) 보불전쟁 이전까지의 프랑스의 병역은 구비옹생시르(Gouvion-Saint-Cyr)가 발의한 1818년 3월 10일 법에 따라 추첨에 의한 개병제를 따르고 있었다. 이후 의무 복무 기간의 변화가 몇 차례 있었지만, 추첨에 의해 선출된 시민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돈을 지불하고 대체 병력을 보내는 것이 허용되는 큰 틀은 1872년까지 변하지 않았다. Annie Crépin, *La conscription en débat ou le triple apprentissage de la Nation, de la Citoyenneté, de la République (1798-1889)* (Arras: Artois Presses Université, 1998), 9.

은 징집의 대상에서 빠져 나가게 되었고 이는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었다. 프랑스 정부 역시 최대한 많은 군인을 확충하기 위해 이러한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21] 공화주의자들이 도입한 속지주의 원칙은 이들에게 프랑스 국적을 부여함과 동시에 군역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1889년 국적법을 제정한 공화주의자들은 공교육과 사회화를 통해 공화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여기며 프랑스에서 교육받고 사회화될 수 있다고 여긴 이민 2, 3세대 집단만을 을 수용하는 배타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이와 동시에 당대 프랑스 사회의 문제였던 군 복무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3. 1927년 국적법과 유럽 이민자 문제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은 프랑스 내 외국인들 중 공화주의 교육을 받은 이민 2, 3세대를 사회 구성원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프랑스는 1차 대전을 경험하며 새로운 외국인 집단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국적법의 필요성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제정된 1927년 국적법 역시 프랑스의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1차 대전은 프랑스의 인구 구성에 전례 없는 변화를 초래하였다. 전쟁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프랑스 청년 남성 370만 명이 전선으로 투입되었으며, 1차 대전 시간 중 프랑스 전체 인구의 20.5%에 달하는 8백만 명의 프랑스 남성이 모병되었다.[22] 최초의 전면전 양상을 띠었던 1차 대전의 결과로 프랑스는 130만 명의 사망자를 내었을 뿐 아니라, 프랑스 남성 노동

21) Donald L. Horowitz, Gérard Noiriel ed., *Immigrants in Two Democracies: French and American Experience*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1992), André-Clément Decouflé, "Historic elements of the politics of nationality in france, 1889-1989," 5.

22) Georges Dupeux, *La Société Française,* 1789-1970 (Paris: Armand Colin, 1792), 박단·신행선 역, 「프랑스 사회사 1789-1970」 (동문선, 2000), 218.

력의 10.5%를 상실하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23] 전쟁으로 인한 부상자는 3백만 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75만 명은 완전한 불구자가 되며 프랑스는 '한 세대를 상실했다'고 언급될 정도로 1차 대전의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24]

자국 청년 노동력을 상실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의 전후 경제복구 작업은 자연스레 인근 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당하게 되었고, 이들은 1920년대 프랑스의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등장하였다. 1차 대전이 진행되는 중에서만 약 44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전시 경제의 노동력 충원으로 프랑스 내로 이주하였는데, 이 중 대다수는 프랑스의 인접국인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탈리아 출신이었다.[25] 프랑스의 전후 복구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경제 호황기를 맞이하자 프랑스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더욱 증가했고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프랑스 여성의 수도 늘어나면서 1920년대 프랑스 사회의 인구 구성은 1차 대전 전과는 또 다른 모습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920년대의 공화주의자들은 프랑스 사회 구성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또 한 번 국적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국적법은 크게 세 부류의 집단에게 프랑스 국적의 접근권을 확대하였다. 먼저 1889년 국적법에서 인정된 속지주의 원칙이 더욱 확대되어 출생 시 프랑스 국적을 획득할 수 있는 집단이 더욱 증가했으며, 외국인과 결혼한 프랑스 여성의 프랑스 국적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국제결혼으로 프랑스 국적을

23) Ralph Schor, *Histoire de l'immigration en France de la fin du XIX siècle à nos jours* (Paris: Armand Colin/Masson, 1996), 45; Gérard Noiriel, *Les ouvriers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XIXe-XXe siècle*, 125. 제라르 누아리엘은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로 인해 프랑스의 산업노동 인구 중 약 10%가 손실되었다고 밝혔다.

24) Georges Dupeux, *La Société Française, 1789-1970*, 박단, 신행선 역, 「프랑스 사회사 1789-1970」, 218-219.

25) 이들 외국인의 국적과 인원을 살펴보면, 에스파냐 및 포르투갈에서 186,000명, 이탈리아에서 7,500명, 그리스에서 25,000명, 알제리와 튀니지, 모로코에서 58,000명, 마다카스카르에서 49,000명, 중국과 베트남에서 36,000명이 프랑스로 들어왔다. Vincent Vict, *La France Immigrée: Construction d'une politique 1914-1997* (Paris: Librairie Arthème Fayard, 1998), 3.

상실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다.[26] 또한, 귀화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들의 프랑스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였다.

속지주의 원칙의 확대는 1927년 국적법 제1조에서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기존 국적법인 1889년 국적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프랑스 태생의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프랑스 국적을 획득할 수 있게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국적 전수의 권리가 남성에게만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모계를 통한 속지주의의 적용은 허용되지 않았다.[27] 그러나 1927년 국적법은 법조문에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어머니를 통한 국적 전수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표기하면서 모계를 통한 프랑스 국적 전수를 허용하였다.[28] 이를 통해 외가 쪽으로 프랑스와 혈연 관계가 있거나 속지주의를 적용받는 자녀들이 프랑스 국적자로 인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1927년 국적법은 외국인과 결혼한 프랑스 여성의 프랑스 국적에 대한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1803년 나폴레옹 민법이 제정되어 국적에 대한 근대적 개념이 탄생한 이래 1927년까지 프랑스에서 기혼 여성의 국적에 대한 권리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었다. 19세기 유럽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남편의 국적을 전수받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프랑스 역시 기혼 여성의 국적이 남편에게 종속된다는 점을 민법으로 명기하며 국제

26) 1927년 국적법의 시행령에서는 해당 법의 특징을 7개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본문에서 밝힌 3개의 내용 이외의 것은 국적박탈과 폐기되는 과거법, 경과조항 등 부차적인 조항이며, 1927년 국적법의 핵심은 프랑스 국적자의 정의, 귀화 규정, 프랑스 여성의 국적 권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Loi sur la nationalité : Suivie des décrets et instructions relatifs à l'application de la loi du 10 août 1927.*

27) 본래 1889년 국적법 제정 당시에는 나폴레옹 민법 제8조 제3항에서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자녀가 프랑스에서 태어났을 때, 그 자녀는 프랑스인이다"고 지정하였으나, 여기서 의미하는 외국인은 오직 남성만을 의미했다. Victor Leray, *La loi du 26 juin 1889 et la condition des étrangers* (Paris: F. Mas, 1891), 2.

28) 1927년 국적법 제1조 제3항은 '프랑스에서 프랑스 국적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적출자', 제2조 제1항은 '프랑스에서 프랑스 출생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태어난 적출자'라고 명기하고 있다. *Ibid.*, 1.

결혼을 한 프랑스 여성을 외국인으로 취급해 왔다.[29] 그렇기에 1927년 이전까지 외국인과 결혼한 프랑스 여성은 외국인이 되어 그들의 자녀에게 프랑스 국적의 권리를 전수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 1927년 국적법 제8조는 국제결혼을 한 여성의 국적 문제를 다루었고, 부부가 결혼하여 프랑스에 거주할 경우 프랑스 여성이 자신의 프랑스 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30]

귀화 규정의 개선은 프랑스 국적법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개방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를 주었다. 프랑스는 19세기 이래 유럽 최대의 이민국이었으나 외국인이 귀화하여 프랑스 국적을 획득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으며 1889년 국적법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고 있었다. 프랑스는 1799년 공화국 8년 헌법에서 프랑스로 귀화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한 이래 1927년까지 이 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31] 그러나 1927년 국적법에서는 제6조 제1항을 통해 '18세 이상의 외국인의 경우, 프랑스에서 연속적으로 3년 간 거주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힘으로써 프랑스에서 거주한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이라면 누구든 프랑스 국적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32] 또한, 개정 국적법은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를 21세에서 18세로 낮추어 더 많은 외국인이 프랑스 국적을

29) 나폴레옹 민법 제12조와 제19조는 기혼 여성의 국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2조에서는 프랑스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이 자신의 국적을 잃고 프랑스 국적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제19조에서는 반대로 프랑스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할 경우 프랑스 국적을 잃고 남편의 국적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Elisa Camiscioli, *Reproducing the French Race: Immigration, Intimacy, and Embodiment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9), 156.

30) *Loi du 10 août 1927 sur la nationalité*, article 8, 5.

31)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1889년 이전까지 국가로부터 거주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1~3년 이후로 귀화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경우는 "프랑스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 "특징적인 재능을 가진 자"에게만 해당하였으며, 1889년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1894년 이후로 이러한 권리가 없는 외국인으로 취급되어 10년 동안 프랑스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귀화 신청을 할 수 없었다. Garner, "The New French Code of Nationality," 380-381.

32) *Loi du 10 août 1927 sur la nationalité*, 3-4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33] 귀화특례 집단을 지정하여 이들에게는 1년의 프랑스 거주 기간만 충족하면 바로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이러한 특례조항은 1889년 국적법에서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1889년 국적법은 특례자에게도 3년의 거주 기간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많은 외국인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27년 국적법은 프랑스나 연합국 군대에서 군 복무를 한 자, 프랑스의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 프랑스에서 태어나 성년이 되어 프랑스에 자신의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귀화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1년으로 경감시켜 줌으로써 보다 많은 외국인이 신속하게 프랑스로 귀화할 수 있게 하였다.[34]이러한 귀화 제도의 개정은 1889년 국적법이 1세대 이민자를 공화국 시민의 범주에서 배제시킨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1889년 국적법이 공화주의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교육과 사회화를 필수 요소로 보았던 반면 1927년 국적법은 1세대 이민자의 귀화를 장려하며 교육과 사회화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27년 국적법을 제정한 입법부는 귀화 제도의 대대적인 개정에 대해 해당 법이 공화주의 정신을 구현한 1889년 국적법의 입법 의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제3공화국의 국적법 정신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35] 실제로 1927년 국적법에서 개정된 부분들은 1889년 국적법을 근간으로 해당 사항들을 확장하여 해석한 결과물이었으며, 새로운 이론이나 개념들이 첨가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귀화를 위한 거주기간의 축소를 설명하면서 1927년 국적법 입법가들은 프랑스 국적법의 기본 원칙에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과거의 국적법이 외국인의 '실질적 동화'(l'assimilation de fait)가 모두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외국인의 '법적 동화'(l'assimilation de droit)를 인정했던 부분을 변경한다고 밝히고 있다. 귀화 희망자에게 10년의 프랑스 내 거주기간을 요구한 것은 귀화 희망자가 10년 간 프랑스 사회 내에 살며 프랑스인으로 모든 동화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보장된 후에 국

33) Arzu Aktas, *L'acquisition et la perte de la nationalite française : 1804-1927* (Paris: Université Paris-Est, 2011), 143.

34) *Loi du 10 août 1927 sur la nationalité*, 27.

35) *Ibid.*, 16.

적 발급을 통해 마지막으로 법적 동화를 인정한 것이 기존의 프랑스 국적법의 의도였다. 그러나 1927년 국적법은 법적 동화를 먼저 실시하여 귀화희망자가 완전히 프랑스에 사회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적을 부여하였으며, 국적법의 입안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프랑스 국적을 얻게 된 귀화자는 프랑스 사회에 전보다 더 큰 소속감을 느끼게 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프랑스 사회에 동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36] 1927년 국적법을 입안한 자들은 귀화가 프랑스로의 사회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렇듯 귀화가 프랑스로의 사회화를 '확증'하는 것에서 '예측'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은 이 시기 프랑스가 외국인의 사회화가 완료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귀화 자체가 사회화를 장려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프랑스 여성의 국적에 대한 권리를 확장한 것에 대해서도 1927년 국적법은 해당되는 개정이 프랑스 공화주의를 거스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이 프랑스에서 계속 거주하며 살아갈 경우 프랑스 사회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프랑스에 사회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이러한 여성의 자녀들은 다른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프랑스의 가치와 문화에 영향을 받으며 자라나기 때문에 프랑스 여성 역시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37]

이렇듯 1927년 국적법은 전쟁 전과는 다른 사회 양상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화주의 이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을 프랑스 국적자의 범주 내로 포함시켰다. 이는 19세기 말의 공화주의자들이 프랑스 공화국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의 자녀만을 공화국 시민으로 인정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1927년 국적법을 평가한다면 프랑스의 가치에 자발적으로 동조하는 시민들을 공화국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공화주의 이념이 더욱 확장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27년 국적법은 공화주의 이념의 구현이라는 측면보다는 당시 프랑스 사회가 가지고 있던 실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측면

36) *Ibid.*, 25.
37) *Loi du 10 août 1927 sur la nationalité*, 17-18.

이 더욱 강했다. 1920년대 프랑스 사회는 인구 구성원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자국민의 수를 증가시켜 국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특히 1차 대전을 겪고 난 후 이러한 인구 문제는 국정의 현안으로 등장했는데, 인구의 부족은 곧 프랑스를 지킬 군인의 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국내의 외국인들에게 프랑스 국적을 부여하여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유사시 군역을 부과할 수 있는 국민을 늘이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던 것이다. 1927년 국적법의 입법 취지와 시행 세칙을 밝히고 있는 시행령은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법적 동화는 반드시 실질적 동화가 수반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과거 프랑스의 국적법에 대한 개념이었다. 이러한 과거의 개념은 공공안전과 국가 보호라는 측면에서 1914년-1918년의 전쟁 이전 시기에는 적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인구통계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오늘날, 프랑스는 본국인의 인구가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이민으로 인해 공화국의 영토 내에 외국인이 급증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프랑스 내에 다수의 외국인을 두는 것은 공공안전과 국가 보호를 위협하는 처사이며, 이들 중 프랑스 인접국의 외국인에게 프랑스 국적을 부여하면서 프랑스인들과 교류하고, 프랑스 교육을 받으며, 프랑스 군대에 복무하게 하는 것은 완벽한 동화를 이루게 할 수 있을 것이다.[38]

1927년 국적법의 시행령이 보여주고 있듯이, 1927년 국적법이 외국인의 귀화 요건을 전례없이 완화시키고, 그 동안 무시되어 왔던 프랑스 여성의 국적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은 프랑스 국적자를 늘이면서 프랑스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1889년의 프랑스는 공화국을 위협하는 세력을 배제하고 공화주의 교육을 받는 후속 세대들만을 공화국 시민으로 인정하기 위해 교육과 사회화를 경험한 부류만을 프랑스 국민으로 인정하는 국적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외국인 문제와 인구 위기를 겪은 1927년의 프랑스는 프랑스로의 사회화가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은 사

38) 국적법 시행령 원문에서 동화의 원칙을 변경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부분을 요약하여 정리한 부분이다. *Ibid.*, 24-25.

회 구성원에게도 프랑스 국적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공화주의의 구현은 국적법 개정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었으며 인구 증가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1927년 국적법으로 인해 프랑스는 가시적인 인구 증가를 이루어 내었다. 국적법 제정 전인 1925년과 1926년에는 귀화자가 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1927년 국적법 제정 이후인 1928년과 1929년에 22,5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933년에는 최고치인 24,763명을 기록하였다. 1932년 법무부에서 1927년 국적법의 결과를 파악하였을 때, 약 350,000명이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중 약 170,000명이 귀화나 국적회복을 통해 프랑스 국적을 얻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39]

그러나 갑자기 프랑스 인구를 증가시키고자 했던 1927년 국적법은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30년대의 경제 침체와 실업률의 증가는 더 이상 프랑스가 외국인을 필요로 하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기존의 프랑스인과 새롭게 프랑스 국적을 얻은 이민자들은 서로 갈등하며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4. 1993년 국적법과 무슬림 2세대 문제

2차 대전 이후 프랑스는 또 한 번 대규모 이민을 맞이하게 된다. 이민의 양상은 1920년대와 동일하게 전후 복구를 위한 재건 작업으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유입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프랑스의 상황과는 달리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영광의 30년' 동안 유입된 이민자들 중

39) 1927년 국적법은 귀화 제도를 개방함과 동시에 외국인과 결혼한 프랑스 여성에게도 다시 프랑스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남성과 프랑스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역시 1927년 국적법에 따라 프랑스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 자들의 수가 35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 중 17만 명이 실제로 1927년 국적법 제정에 따라 프랑스 국적을 획득하는 수혜를 얻게 되었다. Patrick Weil, *Qu'est-ce qu'un Français?* 71.

에는 프랑스 인근의 유럽 국적 이민자가 아닌 프랑스 식민지 출신자들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인근 국가의 이민 노동자를 더 선호하고 있었고, 실제로 출신 국가에 따른 외국인 입국 쿼터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선별적 입국이 불러올 정치적 파장과 외교 문제 등을 예상하여 자유로운 노동 입국을 허용하였다.[40] 그러나 이민 노동자를 특별히 선별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던 더 큰 이유는 프랑스가 미국 주도의 서유럽부흥계획으로 프랑스의 경제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더욱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많은 알제리인들이 이 시기 프랑스로 이주하였는데, 이 당시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외국 노동자들이 프랑스로 들어오는 것보다 알제리인들이 프랑스로 건너오는 것이 더욱 용이하였다. 알제리 노동자들은 1945년부터 1955년까지 약 18만 명이 프랑스로 유입되었는데, 같은 시기 프랑스로 입국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약 16만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알제리인들이 프랑스 내의 노동력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1]

이러한 알제리인의 프랑스 유입은 1962년 알제리가 프랑스에서 독립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알제리와 프랑스 간에 맺어진 전후 조약인 에비앙 협정(Conférences d'Évian)에서 프랑스와 알제리 양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알제리인들은 독립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약 없이 프랑스로 이동하여 직업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조항을 삽입했던 프랑스는 아직 알제리에서 프랑스로 돌아오지 못한 프랑스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지만, 자유로운 이동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은 것은 알제리 측이었다. 독립 이후 불안한 정국 속에서 프랑스로 이주하는 알제리인들이 더욱 많이 늘어났고, 특히 1962년 에비앙 협정 이전에 알제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프랑스의 식민지인으로서 프랑스 국적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었기에 알제리 독립이 알제리인들의 프랑스 유입에 제약을 주지 못했다. 프랑스는 증가하는 알제리 이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연간 입국자의 수를 지정하는 등의

40) Patrick Weil, *Qu'est-ce qu'un Français?* 152.
41) *Ibid.*, 153.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42] 특별하게 강압적으로 이민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이는 이 시기에도 여전히 프랑스가 이민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알제리 이주민들이 영구히 프랑스에 정착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영광의 30년의 마지막 해인 1973년 1월에는 프랑스의 안정된 노동력 수급을 의도한 1973년 국적법이 제정되었다. 1973년 국적법은 1889년 국적법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던 이중속지주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여 프랑스 본국 뿐 아니라 구식민지 영토, 그리고 프랑스의 해외영토까지도 이중속지주의를 통한 국적 획득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하였다.[43] 프랑스 국적법에서 속지주의 원칙은 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프랑스 공화국의 주요한 원칙이었다. 그리고 프랑스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탈식민주의로 인해 대부분의 과거 식민지의 독립을 허용한 상황이었지만, 과거 식민지 지역이 프랑스의 합법적인 영토였음을 부정하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구식민지와 해외영토에도 이중속지주의를 적용하였다. 또한 1973년 국적법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 5년 간 프랑스에서 거주했다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속지주의 원칙을 더욱 넓게 해석하였다.[44]

그러나 1973년 국적법이 제정된 그 해 10월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 침체가 찾아오면서 30여년 간 호황을 맞던 프랑스 경제는 장기 불황에 접어들게 되었다. 더 이상 프랑스는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기존에 프랑스로 이주해 온 구식민지 출신자들이 이미 프랑스에 정착하였고 많은 수가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였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은 1974년 이민을 중단하였고, 1977년부터는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할 경우

42) 에비앙 조약 이후 프랑스의 예상과는 달리 알제리 이민자가 증가하자 1968년 프랑스는 알제리와 연간 2만 5천 명의 이민자만을 수용한다는 조약을 맺기도 하였으며, 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용이한 알제리인들의 이주를 견제하기 위해 알제리를 제외한 마그레브 국가나 다른 유럽 국가에게 프랑스 노동 이민을 장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43) *Journal Officiel de la Republique Français du 10 Janvier 1973* (loi n°73-42 du 9 janvier 1973) article 24, 468.

44) *Ibid.*, article 48, 468.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프랑스 내의 이민자를 돌려보내고자 노력하였다.[45] 하지만 오히려 포르투갈인을 비롯한 유럽 출신의 이민자들이 이 혜택을 받고 본국으로 귀국하였고, 실질적으로 이 제도의 목표였던 마그레브 이민자들의 수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구식민지 이주민의 문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프랑스 내에서 더욱 커져가게 되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자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주민 2세들이 프랑스 사회 내의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이들 이민자 2세의 부모들은 프랑스 식민지 영토에서 태어난 경우가 많았고, 이들이 프랑스로 이주해 프랑스 영토 내에서 그들의 자녀를 출생했기 때문에 이민자 2세들은 이중 속지주의의 적용을 받아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고 프랑스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프랑스 주류의 문화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종교와 인종이 다른 북아프리카 출신 무슬림 2세들이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프랑스 내의 한 집단으로 자리 잡게 되자 프랑스인들의 불만이 증가하였고, 현행 국적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극우정당 민족전선(Front National)이 이민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기치로 정계에 등장하게 되자 프랑스 우파 정당인 공화국연합(RPR)에서도 이민자 문제를 선거강령에 포함시키면서 무슬림 2세대 문제를 프랑스 정치의 이슈로 부각시켰다. 이들은 마그레브 이민 2세대들이 야기하는 사회 불안을 강조하고 이들이 프랑스 문화에 동화되지 못하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민 문제를 공론화했다. 우파 세력은 프랑스 내의 무슬림 집단이 프랑스 공화국에 동화되지 않고 공화국의 가치와 문화를 따르지 않으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들이 프랑스의 정체성을 가지기보다는 자신들의 가족인 북아프리카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우파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공화국에 동조하지 않는 집단에게 프랑스 국적을 부여한 기존 국적법은 현 이민 문제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

45) 한명숙, 「프랑스 국적법 개정과 북아프리카 이민자 문제, 1986-1993」, 『프랑스사연구』, 20호, 159

목되었고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요소가 되었다. 1973년 국적법을 대신하기 위한 새 국적법 입안의 움직임이 우파 정치인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거나 관심을 보였다. 공화국연합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 국적법안에는 이민 2세대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되는 이중속지주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이중속지주의가 더 이상 군사적 및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프랑스에 필요 없는 제도이며, 프랑스 국적은 프랑스인의 혈통으로만 전수되는 엄격한 속인주의 원칙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46] 그러나 이러한 우파의 주장은 과도하게 급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프랑스 행정부에서도 속지주의 원칙은 1889년 국적법 제정 이래 프랑스 국적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라는 점을 들어 속지주의 원칙을 철폐하는 것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적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여 진행되었고 국적법 개정 논쟁은 국민적인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프랑스 의회에서는 여러 논의를 계속하여 진행하였고, 1993년에 이르러서는 메에뉴리법(loi Méhaignerie)이라 불리는 새로운 국적법이 제정되었다. 1993년 국적법에는 여전히 속지주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1973년 국적법에 비해 매우 축소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부과되어 있었다. 기존의 국적법에 따른다면 외국인 부모를 두고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성년이 되었을 때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프랑스 국적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3년 국적법은 반드시 13세에서 18세까지 5년 간 프랑스에 거주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프랑스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47] 이 부분은 의외로 많은 무슬림 2세들이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었는데, 16세에 학교를 졸업하고 실업 상태에 있던 이민 2세대들이 프랑스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48] 게다가 1993년 국적법은 단순히 프랑스에서 출생하고 거주했다는 것만으로 프랑스 국적을 획득할 수 없도록 하였다. 속지주의 원칙으로 프랑스 국적을 가지게 되는 이민 2세대들은 스스로가 프랑스의 공화주의 이념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선언(la manifestation

46) Patrick Weil, *Qu'est-ce qu'un Français?* 157.
47) *Ibid.*, 165.
48) *Ibid.*, 166.

de volonté)을 수행해야 프랑스 국적을 얻게 되었다.[49] 프랑스 대혁명 초기 시민 선서를 한 외국인들에게 프랑스인의 자격을 부여한 것을 들어[50] 프랑스 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프랑스 공화주의에 동조하고 프랑스 사회와 문화에 대한 동화의 의지를 확인받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1993년 국적법은 더 이상 부모가 자녀의 프랑스 국적 신청을 대신할 수 없도록 지정하였다. 부모가 자녀의 국적을 신청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표명되지 않는 행위이며, 이는 의지선언과 함께 프랑스 국적을 희망하는 자의 자발적 참여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51]또한 1993년 국적법은 해당 개정법의 가장 큰 목적이 알제리 출신 이주민 2세대의 국적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알제리 출신 이민자의 2세들은 이중속지주의를 적용받아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프랑스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52]

1993년 국적법은 명백히 구식민지 출신 이주민의 자녀들에게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기 어렵게 하는 것을 의도하였으며, 이들의 프랑스 국적에 대한 권리에 제약을 두는 근거는 공화주의에 있었다. 공화국은 개인의 자발적 참여 의지를 표명한 시민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들 무슬림 2세들은 자신들끼리 모여 공화국의 가치와는 다른 북아프리카의 문화를 유지하고 프랑스 가치에 동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개정의 주된 근거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동화되지 않는다고 간주되었던 이들 무슬림 이민 2세대가 프랑스 국적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 역시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국적 제도 때문이었다. 이들은 공화주의 이념에서 출발한 프랑스 국적제도의 전통인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결과로 프랑스 국적을 얻었던 것이다. 이들 무슬림 2세들은 프랑스 공화주의에 따른 공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받았고 프랑스에서 태어

49) *Loi n° 93-933 du 22 juillet 1993 réformant le droit de la nationalité*, article 11.

50) Patrick Weil, *Qu'est-ce qu'un Français?* 13.

51) 한명숙, 「프랑스 국적법 개정과 북아프리카 이민자 문제, 1986-1993」, 173.

52) *Loi n° 93-933 du 22 juillet 1993 réformant le droit de la nationalité,* article 19.

나 프랑스 문화를 향유하며 자라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 국적법의 입안자들은 과거 공화주의 이념이 국적법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의지선언을 만들어내면서 무슬림 2세들을 공화주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이다.

5. 맺음말

개인의 출신과 배경에 관련 없이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공화국의 가치에 동조하며 자발적으로 참여 의지를 보이는 자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사실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며 동질성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사회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모두 추상화된 한 개인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개인들이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추상적인 개인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한 개인의 배경과 특색, 성향 등이 모두 배제된 추상적 개인은 존재할 수 없이며 이는 집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부분이 바로 프랑스 공화주의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추상적 개인을 전제하고 있기에 구성원들은 개인의 특징이나 배경과 같은 차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동화와 통일성을 강조하게 된다.[53]

실제로 1889년 국적법 제정 과정에서는 공교육과 사회화가 공화주의의 핵심요소로 간주되면서 이민 1세대가 배제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27년 국적법에서는 프랑스의 가치와 문화를 습득하지 못하는 부류로 지정되었던 이민 1세대를 오히려 프랑스 국적자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1993년 국적법 제정 과정에서는 1889년 국적법이 공화주의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으로 도입한 이중속지주의가 공화국의 분열을 조장하고 문제를

53) 프랑스 공화주의의 추상성과 관련된 주장은 Joan Scott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Joan Wallach Scott, *The Politics of the Veil*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2007), 117.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1889년 국적법에서는 교육과 사회화가 공화국 시민 양성의 핵심 요소로 여겨졌으나 1993년 국적법은 무슬림 2세대가 프랑스 내에서 교육을 받고 긴 시간 동안 프랑스 문화와 가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동화되지 않았다고 여기면서 공화주의 이념을 정착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의지선언 과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적법 개정은 단순히 프랑스 공화주의 이념을 시행하려는 목적 이외에도 당시 프랑스 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제정되는 경향이 강했다. 주로 노동력이 필요한 경제성장기나 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공화주의 이념이 사용되며, 반대로 경제 침체기에는 소수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의 프랑스 국적법은 1993년 국적법의 연장선상에 있다. 프랑스는 1993년 국적법 제정 이후에도 몇 차례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지만, 외국인의 국적 발급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및 의지선언의 필수 등 1993년에 제정된 국적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 국적법은 현재 프랑스가 공화주의를 적용하는 방향과 프랑스가 처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당분간은 계속 유지되리라 여겨진다. 유럽 연합이 당면한 경제 위기, 샤를리 엡도 사건과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자와의 갈등 등과 같이 현재 프랑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더욱 외부인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서강대학교, adelaide16@sogang.ac.kr

주제어: 프랑스 국적법(French Nationality Law), 프랑스 공화주의(French Republicanism), 1889년 국적법(The Nationality Law of 1889), 1927년 국적법(The Nationality Law of 1927), 1993년 국적법(The Nationality Law of 1993)

(투고일: 2015. 5. 26, 심사일: 2015. 6. 1, 게재확정일: 2015. 6. 11)

<국문초록>

프랑스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본 프랑스 공화주의 이념의 적용

김진영

이 글은 프랑스 공화주의와 프랑스 국적법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프랑스 공화주의는 공화국의 이념에 동조하고 자발적 의사로 공동체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라면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는 관련없이 공화국 시민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국적법은 이러한 프랑스 공화주의의 이념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프랑스에 공화제가 정착된 이후 이루어졌던 프랑스 국적법 개정 중 주요한 세 차례의 국적법을 분석하였다.

1889년 국적법과 1927년 국적법, 그리고 1993년 국적법은 모두 프랑스 공화주의를 이념적 바탕으로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 법이 적용된 결과는 모두 상이하게 나타났다.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이 왕당파와 교회 세력에 맞서 공화주의를 처음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시기에 제정된 1889년 국적법과, 1차 대전을 경험한 프랑스가 새롭게 사회 구성원을 정의했던 1927년 국적법, 구 식민지 출신자들과의 프랑스 본국인 사이의 갈등으로 등장한 1993년 국적법은 모두 공화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이 법들이 실제로 프랑스인을 정의하고자 했던 방향과 결과는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세 국적법은 당시 프랑스가 처해 있던 상황 속에서 프랑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국적법에 대한 분석은 프랑스의 공화주의가 하나의 고정불변의 이념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며, 실제로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당대 프랑스가 처해 있던 환경과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드러낼 것이다.

<Abstract>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French republicanism through the French nationality law

Jinyoung, Kim

This text is another attemp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rench republicanism and the French Nationality law. French republicanism focuses on the key point that the citizens who agree to the republic's ideology and try to participate in a community voluntarily can be accepted as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regardless of social, economic, cultural background of the individuals. The French nationality law can be the part which reveals this ideology of French republicanism clearly. This paper analyzed the three major cases of the French nationality law revised after the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was settled in France.

The nationality law of 1889, 1927, and 1993 was based on the ideology of French republicanism. However, the results that the law actually applied to people have found to be all different. The nationality law of 1889 enacted when republicans of the French Third Republic first tried to realize republicanism against royalists and the church force, the nationality law of 1927 that France newly defined social members after experiencing the First World War, and the nationality law of 1993 which appeared due to conflicts between people of the former colonies and people of metropolitan France were all the bills based on republicanism. However, the directions and results that the French actually tried to define have found to be all different. And the three nationality laws were enacted by the

ways which reflected French stance in the situation that France faced.

The analysis of these national laws is the concept that French republicanism can be interpreted as various types, not a hard and fast ideology. And actually, French republicanism will reveal the fact that it reflects the environment and situations of the age more clearly.

Homo Migrans Vol.12 (Jun. 2015): 75-93

■ 논문 ■

1960-1970년대 노동총연맹의 이주노동자 인식과 이미지 생산

신 동 규

1. 머리말

이주노동자의 존재는 어떻게 규정되고 정의되는가? 그들의 사회적 표상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합법적 지위를 가진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는 상대적 가치에 의해 규정된다. 즉 국적을 가진 시민과 불법 체류자와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그 존재의 사회적 특징이 결정된다. 특히 배제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미등록 체류자는 시민의 위상을 규정하는 동시에 이민자들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배제의 논리가 시민의 '시민다운 지위'를 규정하는 동시에 이민자 - 즉 이주 노동자 -의 사회적 위상을 결정하게 된다.

에티엔 발리바르(Etienne Balibar)는 "불안전(insécurité)에 대한 희생양을 지목하고 대중적 빈곤에 대한 공포를 정체성들 사이의 갈등이라는 환상적 공간속에 투사하기"위해 미등록 체류자들을 "국가가 창출"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발리바르는 미등록 체류자의 존재가 "예외입법과 차별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결합하면서 일종의 유럽적 아파르트헤이트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 제도적 인종주의가 확산되는 주요 매커니즘 중 하나를 밝혀"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미등록 체류자들의 '불법성'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와 네오파시즘과의 공모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1] 발리바르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은 민주주의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 미등록 체류자들, "배제된 이들" 중에서도 배제된 이들은 [...] 이제 민주정치의 실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저항과 상상을 통해 우리가 민주주의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해준 데 대해, 그리고 이를 말하게 해준 데 대해 그들에게 빚지고 있으며, 법/권리와 정의가 그들에게 회복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쪽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편에 참여하게 해준데 대해 그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2]

우리가 발리바르의 지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해 행해지는 권력의 작동원리와 담론의 구성방식이 이민자 전체의 조건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있다. 나아가 이 배제의 논리는 인민(시민 또는 국민) 전체에 대한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설정한다. '시민의 권리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나누는 논리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시민의 권리를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배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배제상태'가 공포로 다가오는 동시에, '불안전(insécurité)' 상태로 부터의 탈출에 대한 희망이 커진다. 이 관계에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은 양도할 수 없으며, 소멸하지 않는 권리로서의 자연권을 보장해 주는 일차적 권리인 '[정치적 권리로서의]안전(sureté)'을 향유할 수 없게 된다.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면서 미등록 체류자들은 '불안전'한 상황을 만드는 원인으로 간주되면서 희생양이 된다.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은 미등록 체류자의 희생이란 바로 정치적 권리의 박탈, 즉 1789년 인권선언에서 규정한 '안전(sureté)'에서 멀어지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자유', '재산', '안전(suret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1) 에티엔 발리바르, 진태원 역, 『정치체에 관한 권리(서울: 후마니타스, 2011), 34.
2) 같은 책, 35.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배제상태'와 '불안전'에 대한 공포로 말미암아, '불안전' 상태의 원인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는 국민국가의 배제의 동학에 의지하게 된다. 결국 '압제에 저항할 권리'는 '배제상태'와 '불안전'에 대한 공포로 말미암에 희미해지게 된다.

발리바르는 '압제에 저항할 권리'는 '안전(sureté)'의 조건이자 한계라고 말한다. 1789년에는 분명히 '조건'이었다. 그러나 탈경계 시대에는 '안전(sureté)'의 보존을 갈구하는 공인된 '시민'들은 '불안전'의 공포에서 탈피하고자 타인의 '압제에 저항할 권리'를 제한한다. 이렇게 국민국가는 미등록 체류자 – (잠재적 미등록 체류자)외국인(잠재적 시민권 보유자) – 내국인(시민)의 위계질서 속에서 인민(시민 또는 국민)에 대한 통제를 완성하게 된다. 따라서 발리바르의 철학적 사고는 미등록 체류자라고 하는 '소수의 불법집단'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미등록 체류자의 존재를 규정하고 대우하는 방식은 잠재적으로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불완전한 시민권의 범위를 결정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발리바르가 '유럽식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부르는 이민자에 대한 분리가 강화된다. 법에 의해 강제된 분리가 아닌 문화적 차이에 의해 구분되는 형태의 분리는 인종주의 –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신인종주의 – 적 공간구분을 완성한다. 게다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정착한 후 온전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 자들의 공간은 시민권을 가진 자들 중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하층민들의 공간과 교집합을 이룬다. 파리의 방리유(banlieue) 지역이나 영국의 올덤(Oldham), 번리(Burnely) 그리고 브래드퍼드(Bradford) 같은 옛 산업지역의 쇠퇴한 중소도시들은 대표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장기 노동계약으로 정착하게 되는 이주노동자들의 후손들은 이러한 도시 공간에 분리되면서 시민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고려하여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 내는 상상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불러들이는 생산시스템과 그 속에서의 실제 역할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담론질서는 역사적 실제보다 상상속의 공포에 의해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주노동자는 '불안전'의 원인을 제공하는 집단인가? 그들은 국민국가의 성원이 될 자격이 없는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화가 일어나는 일차적 공간인 노동조합의 특성상 노동총연맹이 만들어 내는 이주노동자들의 이미지는 상상속의 공포와 역사적 실제사이의 긴장관계를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실천잡지를 표방한『노동자의 삶』을 중심으로 1960-1970년대 노동총연맹의 현실인식과 정책노선을 살펴볼 것이다. 즉 이 잡지에 표현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 1960-1970년대 프랑스의 이민과 노동문제를 고찰 할 것이다. 특히 '영광의 30년' 이후 경제위기 속에서 서서히 나타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는 노동총연맹의 현실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노동총연맹이 어떠한 계급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지 살펴 볼 것이다.

2. 노동총연맹의 이주노동자 인식

1929년 대공황 이후 실업이 증가하자 외국인 노동자는 실업률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1931년 프랑스의 이민자는 27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공황의 여파로 1932년에 새로운 노동력의 유입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으며, 노동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추방되었다. 1936년에는 지역별로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를 할당한 후 필요한 노동 수요만큼의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통제가 더욱 엄격해 졌다. 이러한 통제 정책으로 말미암아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외국인의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전쟁의 발발은 급격한 외국인 숫자의 감소로 이어졌다. 결국 전쟁으로 인한 프랑스 산업시설과 사회간접 자본의 파괴는 새로운 이주노동자들을 필요로 했다. 1945년 이민국이 새롭게 설치되어 이주노동자의 수요를 조절했다. 이렇게 전후 경제 재건기에 프랑스는 170만 명가량의 외국인 규모를 유지했다. 1946년 외국인의 숫자는

170만 명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으며, 1954년 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장 모네(Jean Monnet)의 주도로 이루어진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미국식 대량생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비숙련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 1950년대 중반이후 서서히 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의 숫자는 1970년대 340만 명에 이르렀다.

1975년 노동총연맹의 총비서 조르주 세기(Georges Séguy)는 이주노동자들이 "2대 중 1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2채 중 1채의 아파트와 도로의 90%를 건설한다"라고 강조했다.[3] 1983년 노동총연맹은 또 다시 이주노동자들이 프랑스 경제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 시켰다.

> 프랑스에 대한 해로움과는 거리가 먼 이민자들의 존재는 프랑스를 위해 막대한 이득을 가져왔다. 기술연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단순육체노동자로서, 단순노동자(O.S)로서, '숙련'노동자로서, 25%의 프랑스의 경제 성장과 부흥, 그리고 프랑스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 이주노동자들은 100개의 주택 중에 30채, 100대의 자동차 중에 25대, 100km의 도로 중 90km를 만들었다[4]

노동총연맹이 이주노동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던 시기는 역설적이게도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담론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을 때였다. 1972년 시작된 인플레이션이 1973년 오일쇼크와 만나면서 시작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는 통화정책을 통해 투자감소를 유도했고, 그 결과 일자리 감소로 인해 1975년 실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5] 이러한 상황에서 1976년 자크 시락(Jacques Chirac) 수상은 "90만 명의 실업자 가 있지만, 동시에 2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존재한다" 면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6개월 이상의

3) Lettre ouverte à Georges Séguy, supplément du Peuple, n° 860, 15 février 1975, 53.

4) Tract, CGT Renault Billancourt, 3 mai 1983, archives de l'Institut d'histoire sociale-CGT (105 CFD 20)

5) 신동규, 「노동총연맹의 이주노동자 정책」, 이기라, 양창렬 외, 『공존의 기술』 (서울: 그린비, 2007), 332.

장기간 실업상태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법을 제정했다.[6]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통계자료 이면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었다. 1973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투입된 산업은 주로 건설, 자동차, 광산, 철강, 화학 등 숙련도가 낮으나 노동강도가 강해 당시 단순노동력을 제공하던 여성노동자들이 일 할 수 없는 분야였다. 더욱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프랑스의 남성 노동자들도 꺼리는 일자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는 비중은 프랑스 인 노동자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산업분야별 외국인 이동[7]

	프랑스인		외국인	
	1975	1982	1975	1982
1차산업	11.6	9.28	6.3	4.95
2차산업	43.5	41.06	72	63.77
3차산업	44.9	46.69	21.7	31.28
총계	100	100	100	100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당시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75%가 신체적 조건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곳에서 일했으며, 80%가 야간작업 혹은 불규칙한 노동시간에 따라 작업을 했으며, 57%는 고된 작업이라고 여겨지는 분야에 고용되었다. 6개월 이상 직무에 관한 교육을 받고 종사하는 경우는 7%에 불과했다.[8]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실업률 증가의 주원인으로 지목 되었다.

> 나는 프랑스와 포르투갈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여기[프랑스]에서 살기가 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카페에

6) 손영우, 「프랑스 노동시장의 이원주의 성격: 이민자와 이민 2세의 사회경제적 위치」,이기라, 양창렬 외, 『공존의 기술』 (서울: 그린비, 2007), 280.
7) 같은 책, 279.
8) 같은 책, 258.

> 들어갈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밤이면 나가기가 주저됩니다. 실업자인 젊은 프랑스인들과의 긴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실업문제]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9)]

> 200만 여명의 실업자 중,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한다(60%). [나이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많은 청년층이 실업상태이다(56.8%). 49세 이상의 사람들도 다수를 차지한다(14.5%). 그리고 사무직, 기술자, 간부들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고되고, 비숙련 저임금의, 때때로 가장 위험한 이민자들의 노동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것을 거절한다. 1976년 정부부처간 공동 조사는 프랑스에서 일하는 150,000명의 외국인의 해고가 최대한 13,000개의 일자리를 남겼다.[10)]

즉 외국인 노동자들이 남긴 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프랑스인들이 거부하였다는 의미이다.

3. 『노동자의 삶』을 통해 본 1960-1970년대 이주노동자

1) 노동총연맹과 『노동자의 삶』

1895년에 결성된 노동총연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은 무정부주의 성향의 아나코-생디칼리즘(anarcho-syndicalisme)의 영향 아래 있었다. 1909년 10월 5일 "실천잡지(Revue d'action)"를 표방하는 『노동자의 삶』의 발간은 당시 노동총연맹에서 무정부주의적 혁명노선이 가지는 확고한 입지를 보여주는 시작점이자 마침표였다. 제호는 무정부주의자로서 노동자 교육과 조합활동을

9) *La vie ouvrière*, octobre 3 au 9, 1977, 신동규, 「노동총연맹의 이주노동자 정책」 332에서 재인용.

10) Tract, CGT Renault Billancourt, 3 mai 1983, archives de l'Institut d'histoire sociale-CGT (105 CFD 20)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 (Bourse du travail)의 설립자였던 페르낭 펠루티에(Fernand Pelloutier)가 1910년에 쓴 책 『프랑스 노동자의 삶(La Vie ouvrière en France)』에서 비롯되었다. 창간호에서 "우리는 [브르주아]교육의 힘을 믿지 않는다. 진정한 교육자(véritable éducatrice)는 행동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스스로 그 역할을 규정하였던 『노동자의 삶』은 빅토르 그리퓨엘(Victor Griffuelhes), 알퐁스 메르하임(Alphose Merrheim), 조르주 이브토(Georges Yvetot), 피에르 모나트(Pierre Monatte), 레옹 주오(Léon Jouhaux) 등의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자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모두 평화주의(pacifisme) 노선을 견지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자본주의 국가에 거리를 두며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했다. 이들 중 레옹 주오와 조르주 이브토는 신성동맹(Union sacrée)에 참여해 참여정책(Politique de présence)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전시 물자 생산을 독려하는데 앞장섰다. 레옹 주오는 전후 노동총연맹의 일간지 『인민(Le Peuple)』의 논조를 지지하는 다수파를 대표하면서 개혁주의 노선의 지도자로 부상했으며, 1921년 노동총연맹의 분열 후 1936년 재통 합 될 때까지 노동총연맹을 이끌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자의 삶』의 편집진의 변화는 노동총연맹에서 공산주의 노선이 중요한 정치집단으로 등장하는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1904년 장 조레스(Jean Jaurès)에 의해 창건된 『뤼마니떼(L'Humanité)』 는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노선의 노동자인터내셔널프랑스지부(Section Française de l'Internationale Ouvrière)의 기관지에서 공산당(Parti communiste)의 기관지로 변화했다. 『노동자의 삶』도 곧 『뤼마니떼(L'Humanité)』와 같은 길을 걸었다. 1922년 새로운 편집진에는 가스통 몽무소(Gaston Monmousseau)를 중심으로 줄리앙 라카몽(Julien Racamond), 에두아르 뒤딜리유(Édouard Dudilieux), 피에르 세마르(Pierre Sémard), 모리스 샹벨랑(Maurice Chambelland) 등 초기 아나코-생디칼리즘의 영향아래 있었던 혁명적 노동조합주의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921년 노동총연맹의 분열 당시 혁명노선을 공유했던 공산당 계열과 무정부주의자들이

지지했던 통일노동총연맹(CGTU)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그러나 1923년 통일노동총연맹의 붉은국제노동조합연맹(L'Internationale syndicale rouge, ISR)의 가입문제는 『노동자의 삶』이 공산당과 보조를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새로운 국제 노동연맹을 지지하는 아니코-생디칼리스트들과 레닌을 지지하는 공산당 계열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연대해 순수한 무정부주의적 노선의 아나코-생디칼리스트들이 볼셰비키에 반대하는 것을 비판했으며, 가스통 몽무소가 제안한 붉은국제노동조합연맹 가입안을 통과시켰다.[11] 이러한 상황아래 공산당에 비판적이었던 모리스 샹벨랑을 제외한 대부분의 편집진들은 공산당에 가입한 후 1920년대 중반에는 공산당의 주요 간부를 역임하였다. 이렇게 1936년 두 노총의 재통합 까지 『노동자의 삶』은 통일노동총연맹을 대표하는 노동자 잡지가 되었다.

1936년 노동총연맹과 통일노동총연맹의 재통합으로 새로운 노동총연맹(CGT)이 만들어졌다. 이 새로운 총연맹에서 기존 노동총연맹 계열(ex-confédéré)의 레옹 주오가 이끄는 개혁주의 노선의 목소리는 공식 기관지가 된 『인민』이 대변했으며, 통일노동총연맹 계열(ex-unitaire)은 브누아 프라숑(Bnoit Frachon)의 지도아래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노동자의 삶』을 중심으로 모였다. 그리고 자본주의 생산질서의 개혁을 요구하는 『인민』과 소비에트를 모델로 혁명적 변화를 추구하는 『노동자의 삶』 사이에는 제3의 길을 추구하는 중도파가 르네 블랑(René Belin)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새로운 잡지 『노동조합(Syndicat)』을 발간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레옹 주오 지지파와 브누아 프라숑 지지파가 레지스탕스에 참여한데 반해, 『노동조합』 그룹은 비시정부에 협력하였다. 따라서 전후 르네 블랑 지지그룹은 자연스럽게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한데 반해, 『인민』은 개혁노선을, 『노동자의 삶』은 프랑스공산당(PCF)의 노선을 대표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후 프랑스 공산당의 약진과 더불어 1946년에 공산당 계열이 노동총연맹을

11) 743대 406으로 CGTU의 ISR의 가입이 가결되었다. Michel Dreyfus, *Histoire de la CGT* (Bruxelles: Editions Complexe), 128.

장악하자, 이에 반대하는 개혁노선이 1947년 노동총연맹-노동자의 힘(CGT-Force ouvrière)을 결성했다. 그러나 1946년 까지 개혁노선이 다수를 차지했던 『인민』은 노동총연맹에 잔류하면서 노동총연맹의 공식기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결국 활동가 교양 매체로 자리매김 했다. 그리고 『노동자의 삶』은 노동자 대중을 위한 잡지로 거듭났다.

피에르 모나트, 가스통 몽무소,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비합법 활동 시기 브누아 프라숑으르 거쳐 다시 가스통 몽무소가 1960년까지 편집위원장을 지낸 『노동자의 삶』은 공산당원인 앙리 크라숙키(Henri Krasucki)가 1982년 까지 이끌었다. 따라서 1960-1970년대 『노동자의 삶』은 프랑스 공산당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노동총연맹의 현실인식과 정책노선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고 할 수 있다. 이후 『노동자의 삶』을 이끈 루이 비아네(Louis Viannet, 1982-1992)와 프랑수아 뒤테이유(François Duteil, 1992-1999)는 모두 공산당 정치국(Brureau politique) 위원이었다. 이것은 노동총연맹의 총비서는 프랑스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어야 한다는 전통이 노동총연맹에 대한 프랑스 공산당의 지배를 보여주듯이 『노동자의 삶』과 프랑스 공산당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프랑수아 뒤테이유의 뒤를 이은 알랭 기노(Alain Guinot, 1999-2010)는 2001년 『노동자의 삶』의 제호를 『새로운 노동자의 삶(La Nouvelle Vie ouvrière』으로 바꿨다. 점차 "실천잡지"에서 정보전달의 매체로 변화하면서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노동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매체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제 『새로운 노동자의 삶』은 "실천잡지"가 아닌 "사회, 법률, 노동조합 정보(information sociale, juridique et syndicale)" 매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노동자의 삶』을 통해 본 노동총연맹의 이주노동자 인식: 하나의 계급?

알제리 독립은 프랑스의 인구 구성 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에비앙 협정으로 알제리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알제리인들의 프랑스 노동이주를 허락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로 노동이주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62년 43만 명이던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1968년에는 22만 명 증가했으며, 1975년에는 44만 명이 더해져 총 109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1968년을 기점으로 유럽 이민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프랑스의 이민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1975년 까지 새로 유입되는 이민자의 73%가 아프리카 출신이었으며, 이들의 이주 목적은 대부분 일자리였다.[12)]

프랑스 이민자의 지역별 분포
(INSEE, Les immigrés en France, 2005, p. 49)

	1962	1968	1975	1982
유럽 출신	78.7	76.4	67.1	57.3
아프리카 출신	14.9	19.9	28	33.2
총 수	2,861,280	3,281,060	3,887,460	4,037,036

1972년 2월 2일 『노동자의 삶』은 "우리들 사이에, 우리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소개했다. 그리고 1973년 4월 25일에는 "프랑스인, 이민자: [유일한] 하나의 노동계급"이라는 표제와 함께 특집기사를 실었다. 이 두 기사는 이주노동자의 특수성보다는 노동자로서의 동질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구호로 시선을 끌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노동계급' 혹은 '이주노동자' 중 어떤 정체성으로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집단행동에 나선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13)] 이 두 기사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지배적인 담론을 형성했던 단일한 '노동계급' 노선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이주노동자들은 공존의 대상이 아닌 단기 노동체류자들로서 일시적 통합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14)]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노동자의 삶』이 '하나의 노동계급'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실현'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즉

12) 손영우, 「프랑스 노동시장의 이원주의 성격: 이민자와 이민 2세의 사회경제적 위치」, 256-257참고.

13) Laure Pitti, "Grèves ouvrières versus luttes de l'immigration: une controverse entre historiens", *Ethnologie française*, vol.31, 2001/3, 467.

14) 신동규, 「1980년대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이주노동자와 신인종주의: 계급과 인종사이」, 『Homo Migrans』, vol. 7 (2013), 44.

이민자들을 “완전히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과 노동자들”로 표현하고 있다.[15)]

V.O. 1973. 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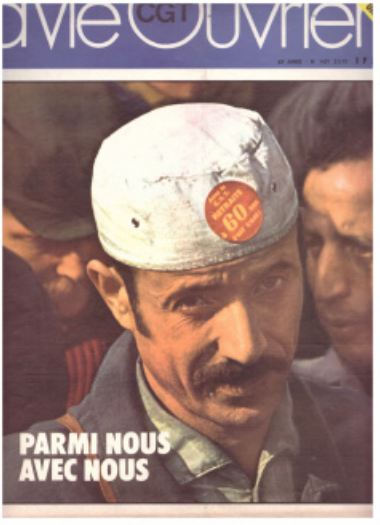

V.O. 1972. 2. 2

‘하나의 노동계급’이라는 주장은 이주노동자와 프랑스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것은 노동총연맹의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노동조건의 개선과 임금인상은 프랑스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16)] 결국 단일 계급 논리에 이주노동자들은 프랑스 노동자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매개자로 등장할 뿐이다. 1972년 2월 2일자 『노동자의 삶』의 표지 사진은 이주노동자를 통해 ‘60세 정년퇴직’을, 1973년 4월 25일자 표지사진은 ‘고용보장’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해고(licenciement)’가 프랑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의미한다면 이주노동자들에게는

15) *La vie ouvrière,* 25-4-1973
16) 신동규, 「1980년대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이주노동자와 신인종주의」, 45.

'계약종결(fin de contrat)'가 실직을 의미하고 있었다.[17]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기업주의 사회적 실천(pratique sociale)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외국인노동자를 하나의 계급으로 규정하고 담론전쟁을 벌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다른 한편으로 1960-1970년대 『노동자의 삶』이 소개하는 많은 이미지들이 이주노동자들의 특수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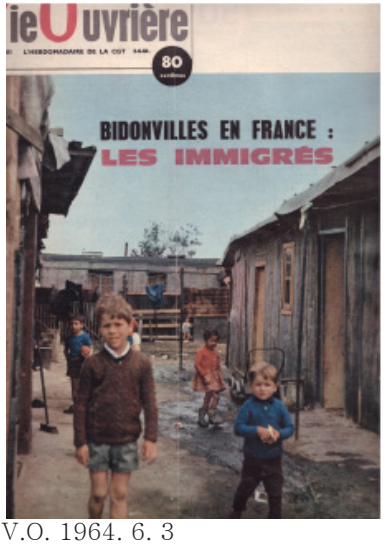

V.O. 1964. 6. 3

V.O. 1966. 3. 30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조건은 프랑스 노동자들과 명확하게 비교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일반적인 이민자들의 주거 공간은 대도시의 고층건물과 대비되는 도시 외곽의 판자촌이었다. 1966년『노동자의 삶』은 폐차로 만들어진 주거지에서 6명의 포르투갈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비참한 조건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미지 속에 나타나는 판자촌의 풍경은 이민자 주거환경 문제의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17) *La vie ouvrière*, 2-2-1972

V.O. 1966. 3. 30

또한 많은 이미지들이 프랑스인들과 더불어 사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신체적 특징을 부각시키면서 정형화된 이미지들을 재생산 하고 있다. 『노동자의 삶』이 생산해내는 검은 피부에 두꺼운 입술을 가진 아프리카인들의 이미지는 타자화된 이민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신체적 특징이 부각될 뿐 프랑스에서 프랑스인들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의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먼 곳에서 프랑스를 찾아온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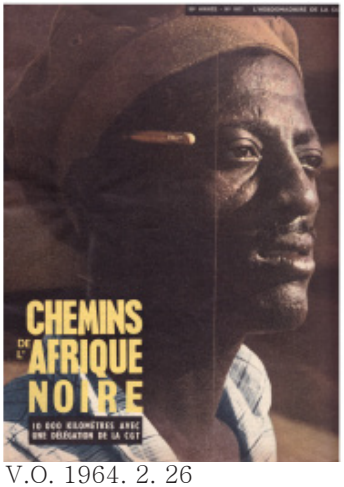

V.O. 1964. 2. 26

V.O. 1967. 11. 29

또한 백인 외국인들에게도 같은 시선이 적용되었다. '바스크식 모자(bonnet basque)'로 불리우는 검은 베레모를 쓴 포르투갈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하나의 계급'아래 묶이는 동질성보다는 문화적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미지는 '타자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다.

V.O. 1965. 4. 7

V.O. 1970. 4. 8

이러한 이미지들은 실제 인식에서 이주노동자들을 프랑스노동자들과 동질적 존재가 아닌 이질적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민자들을 타자화 시키는 이미지 생산주체의 시선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노동총연맹의 사회 통합정책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통합의 대상일 뿐 통합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이주노동자를 노동계급 내의 특수한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변화의 시점은 1980년대 초반이었다. 특히 1982년과 1983년에 파리 근교에서 발생한 파업은 이주노동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집단 정체성을

이주노동자가 아닌 비숙련 노동자(ouvrier spécialisé)로 규정했다. 이것은 자신들의 노동조건이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또한 '이방인'들의 고립된 투쟁으로 간주되는 것을 경계했던 것이다. 이것은 프랑스에서 자신들을 타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맺음말

노동총연맹은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분명한 것은 노동총연맹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배제의 논리에 맞서 생산시스템 속에서 그들의 실제 역할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즉 노동총연맹은 이주노동자들이 프랑스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외면하는 위험하고 고된 일을 대신 맡아서 해주는 노동계급의 일원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실업률 상승의 주범으로 간주하는 인종주의적 시각과 대조되는 것이었다. 노동총연맹은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숙련도가 낮으나 노동 강도가 높은 분야에 종사했으며, 이들이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던 건설, 자동차, 광산, 철강, 화학 등의 분야에 고용되어 소비사회의 필수품들을 생산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올바른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노동총연맹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실천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노동총연맹의 전략에서부터 비롯된 모순이 원인이었다. 노동총연맹은 '하나의 노동계급'이라는 전통적이며 교조적인 시각을 통해 이주노동자와 프랑스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국경을 넘어온 이주노동자의 특수성 보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로서의 동질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구호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단일한 노동계급' 노선은 노동운동에서 지배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양자 모두 자본주의적 생산시스템의 동일한 피해자라는 관점이었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에서는 단기 노동체류자로 입국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일시적 통합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은 더불어 살아가야할 공존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내국인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두 집단은 이질적인 사회경제적 조건과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노동총연맹은 이주노동자들의 특수한 현실을 알고 있었다. 특수성에 대한 실제 인식과 단일한 계급을 지향하는 선언적 구호의 차이는 역설적이게도 모순된 이미지 생산으로 귀결되었다. '하나의 노동계급'이라는 구호아래 함께 일하고, 함께 투쟁하며, 함께 생활하는 이주노동자와 프랑스 노동자의 모습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타자화된 대상으로 묘사하는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고 재생산 되었던 것이다.

창원대학교, shindongkyu@changwon.ac.kr

주제어: 노동총연맹(CGT),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 비숙련 노동자(unskilled workers), 이미지(Image), 노동자의 삶(La vie ouvrière)

(논문투고일: 2015년 6월 9일, 심사일: 6월 15일, 게재확정일: 6월 19일)

<국문초록>

1960-1970년대 노동총연맹의 이주노동자 인식과 이미지 생산

신동규

노동총연맹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배제의 논리에 맞서 생산시스템 속에서 그들의 실제 역할을 강조했다. 즉 노동총연맹은 이주노동자들이 프랑스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외면하는 위험하고 고된 일을 대신 맡아서 해주는 노동계급의 일원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실업률 상승의 주범으로 간주하는 인종주의적 시각과 대조되는 것이었다. 노동총연맹은 '하나의 노동계급'이라는 전통적인 시각을 통해 이주노동자와 프랑스노동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국경을 넘어온 이주노동자의 특수성 보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로서의 동질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는 구호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단일한 노동계급' 노선은 노동운동에서 지배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양자 모두 자본주의적 생산시스템의 동일한 피해자라는 관점이었다. 그러나 동총연맹은 이주노동자들의 특수한 현실을 알고 있었다. 특수성에 대한 실제 인식과 단일한 계급을 지향하는 선언적 구호의 차이는 역설적이게도 모순된 이미지 생산으로 귀결되었다. '하나의 노동계급'이라는 구호아래 함께 일하고, 함께 투쟁하며, 함께 생활하는 이주노동자와 프랑스 노동자의 모습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타자화된 대상으로 묘사하는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고 재생산 되었던 것이다.

<Abstract>

The CGT's Perception of migrant workers and production of images in 1960s and 1970s

Dongkyu Shin

CG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organizations to socialize migrant workers. This french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opposes the logic of exclusion and points out the role migrant workers play in the production systems. CGT doesn't consider them as a factor increasing the unemployment rate, but as the part of working class. Thus the CGT establishes the relation between french workers and migrant workers under the influence of slogan “one sole working class”. Ignoring distinct characteristics of migrant workers, this slogan highlights homogeneity and universality as victims of capitalism. However, the CGT perceives special situations of migrant workers. Their labor conditions and living environment are particularly bad and worse obviously than those of french workers. This difference between perception of special situation and slogan aiming one sole working class leads to produce several type of paradoxial images. Under the slogan of “one sole working class”, images which the CGT produce in La Vie ouvrière in 1960s and 1970s, describe migrant workers as otherized body.

Homo Migrans Vol.12 (Jun. 2015): 94-97

■ 서평 ■

Aviva Chomsky, *Undocumented: How Immigration Became Illegal* (Beacon Press, 2014)

김 헌 기

1980년에 시작된 신자유주의와 전지구화의 흐름은 자본과 노동의 전지구적 이동을 초래했다. 자본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함에 따라 더 이상 국내 자본과 국외 자본의 구분이 어렵게 된 한편, 노동의 이동 또한 활발해져서, 이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활발한 현상 뒤에는 전혀 다른 두 방식의 대응이 있다. 자본의 이동은 최대한의 운동성을 보장받는 반면, 그에 따른 필연적인 노동의 이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가해진다. 또한 노동의 이동, 즉 이민에 대한 적대적 이데올로기가 폭증하고 있다.

아비바 촘스키의 책 『미등록이주자: 이민은 어떻게 불법이 되었나(Undocumented: How Immigration Became Illegal)』는 미국 이민을 둘러싼 위와 같은 현재의 정세가 형성되어온 역사적 과정을 논하고 있다.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불법성(illegality)이 항구적이고 절대적인 범주가 아님이 드러난다. 그녀에 따르면, 오늘날의 불법성은 1965년 이후에 나타난 것이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정복 이래로 사람들을 조직하고 범주화하는 주요 원칙은 항상 변해왔다. 먼저는 종교를 통해, 그리고는 혈통/인종을 통해, 마지막으로는 바로 불법성과 관계하는 국적을 통해 사람들의 이동과 한 사회에서 자원에 접근할

권리가 제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 범주의 변화과정은 어느 한 범주의 폐기에 이어 어떤 신설 범주가 등장하는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국면에서 여러 범주 가운데 하나의 범주가 우세하게 재편성되는 구조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는 국적이 지배적인 차별 범주로 기능하고 있지만, 종교와 혈통/인종 또한 복합적으로 그 차별의 작동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책의 1장은 국적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의 이동성 제한과 불법성 범주의 구성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는지를 논한다. 서구 기독교의 최전선이었던 이베리아 반도에서 레콘키스타(Reconquista) 이후, 종교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이동성의 차등을 설정하는 중심범주였다. 비기독교인은 축출과 제한의 대상이었고, 오직 기독교인만이 교의의 전파와 정복을 위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되었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정복과 이주에 의해 발생한 에스니시티(ethnicity)에 근거하여 차별과 배제가 행해졌다. 이러한 인종/혈통에 근거한 차별은 국적을 근거로 한 이동성 또는 이민 제한의 국면에서도 살아남아 이제껏 그 영향력이 소멸되지 않았다. 1960년대 미국에서 민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인종과 같은 선택할 수 없는 개인의 속성으로 인한 차별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국적에 의한 차별, 구체적으로는 부유한 나라에 속해 있는 인민들과 가난한 나라에 속해 있다가 미국으로 돈을 벌러 오는 인민들 사이의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2장에서는 중미 지역 출신으로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 미국의 미등록이민자가 된 이들의 기원을 짚어나간다. 미국 이민은 노동의 필요에 따라 수 세기간 계속되었다. 이민이 불법적이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특히 멕시코인들은 철도 건설과 미국의 계절노동 수요의 부침에 따라 자유롭게 미국의 국경을 넘나들었고, 때로는 브라세로 프로그램과 같은 노동 이주 정책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래로 '국경이 멕시코인들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의 자유로운 월경이 금지되었고, 미국 내에 머무는 체류허가증 없는 멕시코인들은 미등록이주민이 되었다.

(미등록) 이주민들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 후에 불법화되어가는 경로가 3장에서 서술되고 있다. 이 장의 내용에 따르면, 이주민들은 입국 심사 없이 미국에 들어오거나 한시적인 체류증을 가지고 입국하였다가 시효가 만료되면 불법적인 지위에 처하게 된다. 멕시코와 맞닿은 미국 남부 국경은 입국 심사 없는 월경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멕시코를 비롯하여 중남미로부터 집결한 월경시도자들은 강도와 살해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가려 한다. 이러한 위험은 1990년대 들어와서 문지기 작전(Operation Gatekeeper)등으로 국경 봉쇄가 강화되면서 더욱 위협적이게 되었다.

4장의 묘사에 의하면, 미등록이주자의 불법성은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법적 틈새"를 탐색하게 한다. 그들의 불법적 상태는 사회복지 사업에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며, 노동과 활동을 위해 위조 서류를 이용하게 하여 그들을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불법성은 미등록이주자들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뿐인가? 아니다. 그들의 체포는 이민국의 '비일관적' 존재의 이유이며, 사설 구금 시설 산업의 수입원이기도 하다.

5장과 6장에서는 노동 영역을 주시하여 미등록이주자들이 그 불법성으로 인해 종사하게 되는 직종을 알아내며, 그러한 노동이 전지구적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확정한다. 1965년 이민법 이후 미국 내 거주 멕시코인들의 지위가 불법화되긴 했지만, 그들의 노동까지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었다. 미등록이민자들의 제한된 노동 선택과 수행은 그들을 저임금의 비숙련 노동으로 몰아넣었다. 주로 농업, 건설업, 단순 서비스업 등 미국인이 꺼리는 직종에서 자본을 위해 '값싼' 노동력을 바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등록이주민의 상황의 최종적 원인은 단지 법률인가? 이주의 문제는 사회·정치·경제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1980년대 이후로 공급 위주의 경제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횡행하면서 사회의 안정성이 찢겼고, 제조업이 퇴조하고 서비스업이 부상하면서 미국 내 저숙련

노동력의 수요가 폭증했다. 이 수요를 채운 것이 바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이었다. 이주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양가적이다. 미국의 행정부는 불법이민을 단속하는 동시에, 라틴 아메리카의 유출-이민을 부추기는 정책을 벌이고 있다. 이민 행렬을 만들어내는 주요 요소는 다름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인 것이다.

위에서 대략 살펴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촘스키의 이 책에서는 불법성의 계보적 분석, 그 사회적 맥락, 사회·경제적 배경이 명료하게 분석되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책에서는 불법성이 법률적 정의와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제한되어 표상될 뿐이다. 불법성은 법률적 지위뿐만 아니라 그 사회경제적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미등록이주민 당사자들이 체험하는 신체적, 감각적, 일상적 경험으로서의 불법성을 포함한다. 즉 불법성은 법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직접적이고 체화된 경험을 아우른다.[1)] 이러한 체험된 경험으로서의 불법성까지 분석될 때에 불법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 지평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orient84@hanmail.net

1) 강윤희, 「환영받지 못하는 천국의 시민: 미국 내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들의 체험된 경험으로서의 '불법성'」, 『비교문화연구』 제18집 2호, 2012, 5~51.

Homo Migrans Vol.12 (Jun. 2015): 98-107

■ 서평 ■

폴 콜리어, 『엑소더스』, 김선영 옮김, 21세기북스, 2014.

강 준 영

국가 간 이주 문제는 상이한 세 집단에 걸쳐 있다. 다시 말해 국가 간 이주는 이주자, 유출국의 남겨진 사람들, 유입국의 원주민이라는 세 집단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 간 이주 문제에 관한 연구 및 정책은 이주가 이 세 집단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주의 다양한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폴 콜리어에 따르면 이주라는 특정한 사태에는 "이익을 얻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공존한다는 점"(p. 37, 38)을 받아들이고, 이주라는 동일한 사태에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각 집단 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특정 사태에 관한 연구는 그 사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저자는 집필의 목적, 논의의 순서, 방법론을 제시하는 1부에서 우리는 "이주자들 자신과 유출국에 남겨진 사람들, 유입국의 원주민들 [...] 각 집단이 어떤 일을 겪는지 설명해줄 이론과 근거가 필요하"(p. 34)며, 이 이론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이주에 관한 연구서에서 연구자가 자신이 이주에 관해 다루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집필 목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주에 관한 종래의 연구들은 이주가 이 세 집단에

야기할 상이한 경험과 그 여파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참고로 이 책은 2013년 10월 영국에서 출간되었으며, 한국어 번역본은 2014년 8월에 출간되었다. 국가 간 이주의 긴 역사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연구의 부족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아프리카 경제연구센터 소장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에 천착해온 세계적인 빈곤국 전문가인 저자는 국가 간 이주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빈곤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주가 상이한 집단에 미치게 될 영향을 조망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이주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취하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저자는 도덕 심리학자 조너선 헤이트의 2012년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의 단초를 찾는다. 저자에 따르면, 조너선 헤이트는 특정 사안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사람들이 고수하고 있는 가치가 추론을 규정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우리는 흔히 추론이 판단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추론을 끌어다 자신의 도덕적 취향에 따라 내린 판단을 정당화하는데 쓴다. 저자는 윤리관이 우리가 수용하려는 추론과 근거를 결정하는 이러한 "미숙한 편견"(p. 22)이 이민 문제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민 문제만큼 한쪽 주장에 온갖 배타적 주장과 근거를 늘어놓는 경우는 없다. 이민 문제를 논의하는 각각의 진영은 자신의 도덕적 취향과 선험적 편견에 맞는 주장과 사실만을 수용하려 들며, 이로 인해 이주에 관한 논의의 구도는 양극화되었다. 저자는 이주는 분석의 대상이기에 앞서 정치적 논란거리였으며,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이민에 관한 연구들도 대개는 탁월한 근거에서 도출 되었다기 보다는 편협하거나 전문적이고 확고한 자신의 견해에 들어맞는 내용만을 정리한 게 대부분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왜 선험적인 도덕적 취향에 입각하여 이민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저자에 따르면 근거를 둘러싼 논쟁은 근거의 적합성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반면, 가치관을 둘러싼 의견의 충돌은 해결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보기에 공리주의적 보편주의와 자유주의적 윤리관에 입각하여

국가 간 자유로운 이주를 전적으로 허용하고 모든 불법 이주민들에게 모든 합법적 지위를 단번에 부여하기를 원하는 이주 옹호자들의 견해나 외국인 혐오주의 혹은 인종주의에 근거 하여 이민 자체를 반대하는 "적대적인 광적 집단"(p. 39)의 견해 모두 선험적인 도덕적 취향에서 도출된 극단적인 견해의 전형일 뿐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도덕적 관념으로 선호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근본주의자들의 견해는 이주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이한 집단에 미칠 상반된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현실적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이주를 옹호하는 전형적인 연구들에서는 윤리적 틀이 이주 문제를 매우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데, 이주로 인해 야기되는 상반된 효과들을 '논란이 많다'거나 '부차적'이고 '단기적'인 것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국가 간 이주가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오늘날 이러한 극단적인 견해들은 이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주 문제의 핵심 쟁점은 '이주가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라 '가장 적절한 이주율은 무엇인가?'와 같이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이민 문제에 대한 자신의 선입관이나 순간적인 판단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이주에 따른 각 집단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근거를 적절히 활용해 차분히 사고"(p. 23)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야만 이주 정책에 관한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해지며, 관련 집단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합당한 이주정책을 모색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합당한 이주정책을 모색하고 '근거를 활용한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방법론적 도구로서 경제학에 주목한다. 저자는 근거에 따른 분석은 경제학의 가장 큰 강점이며 경제적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특정 사태의 원인 및 결과에 관한 더욱 전문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경제적 분석 도구란 '그래프 모형'과 '한계적 분석(margianal analysis)'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민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론적 도구로서의 경제학에 대한 이러한 칭송을 저자가 경제학자라는 사실을 감안하고 읽어야 한다. 예컨대 경제학이라는 무대의 주연 배우인 '세테리스 파리부스'(ceteris

paribus)—특정한 변수 외에 다른 변수들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는 것—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그래프 모형은 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말미암아 저자가 지적했듯 우리의 이해를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도구로서만 그 의미를 한정해야 한다. 책 곳곳에 걸쳐 등장하는, 일견 과학적으로 보이는 그래프를 사태를 설명하는 확실한 지표로서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보다 우리가 이민에 관한 논의에 일정한 진보를 제시하기 위해 취해야 할 경제적 분석 도구는 한계적 분석이다. 경제학에서 한계적 분석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의사결정들이 '전부 아니면 무(all or nothing)'와 같은 흑백논리에 따라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의 계획과 행동을 상황에 맞춰 조금씩 바꾸어 최대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을 모색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저자에 따르면, 한계적 분석 방법은 확고하고 선험적인 자신들의 도덕적 취향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현실세계의 문제들을 도외시하는 극단적인 견해들을 포괄하는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론이다. 이는 선험적 도덕관념에 근거하여 주장을 개진하는 근본주의자 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극단적으로 갈린 양 진영의 논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사이 불법 이주민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한계적 측면에서 개선시킬 수는 있다.

저자는 이처럼 이민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이민이라는 동일한 사태에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는 상이한 집단이 존재하고, 이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 상이한 집단의 입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제시하였다. 또한 저자는 이러한 검토가 선험적 도덕적 취향에 근거한 흑백논리가 아니라 회색지대에 무수히 존재하는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들을 고려하는 한계적 분석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자신이 설정한 이러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1~4부에 걸쳐 이주 규모와 속도가 이주민, 유출국의 남은 사람들, 유입국의 원주민들 세 집단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조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여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시한다. 마지막 5부에서는 이 각각의 여파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포괄적 정책을

제시한다.

1부에서 저자는 이주민의 입장에서 이주의 원인과 이주의 규모와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주는 본질적으로 역기능적 사회모델(social model)을 갖춘 나라에서 탈출하는 행위"(p. 51)이다. 여기서 사회모델이란 "한 나라의 제도, 규율, 규범, 조직의 조합"(p. 49)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 나라의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주는 순기능적 사회모델을 갖춘 국가로 탈출함으로써 소득 격차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제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이처럼 이주의 본질적 성격과 동기를 규정한 후 이주의 규모와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1) 유출국과 유입국의 소득 격차의 정도 2) 이주를 가로막는 법적, 사회적 요인 3) 유입국에 존재하는 디아스포라의 규모를 제시한다. 특히 저자는 이주에 따르는 초기 투자비용과 입국을 가로막는 무수한 법적 제약을 경감시켜주는 "이주의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무이한 요소"(pp. 219, 220)로서 유입국에 존재하는 디아스포라의 규모를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디아스포라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주율은 증가하고 동시에 동화율도 감소하여 유입국 원주민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주의 규모를 결정하는 디아스포라의 규모 문제는 유입국 원주민에 관해 다루는 2부에서 다시 거론된다.

이어지는 2부에서 저자는 이주가 유입국 원주민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살펴본다. 저자는 이주가 유입국의 원주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순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유입국의 이주 정책은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심각한 것은 이주의 사회적 여파다. 저자는 미국의 사회과학자 로버트 퍼트넘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한 공동체에 상이한 문화를 존속시키는 이주자가 많아질수록 이주자와 원주민 간의, 그리고 심지어 원주민 간의 상호 배려가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상호 배려란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공감대에서 생겨나는 행동 양식으로 "공동체 구성원에게 동료애와 연대감을 느끼게"(p. 85)하며, 이러한

동료애와 연대감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들이 같은 공동체 내의 경제적으로 운이 없는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소득을 이전케 할 동기를 만들어주고 공공재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평등을 위한 동력"(p. 312)으로 작용한다. 저자는 문화적 격차가 큰 이주민의 이주가 가속화 될수록 유입국 원주민들 간의 문화적 거리가 증가하며, 이는 유입국 집단 간의 긴장감을 증대시키고 공공재의 재분배를 악화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미국에서 이주율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를 거론한다. 저자에 따르면 최근 몇 십년 사이 캘리포니아의 공공서비스가 붕괴했는데, 이는 낮은 소득 구간에 몰려 있는 이주민들을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여기지 않는 캘리포니아 고소득 집단이 세금 파업을 하면서 재산세에 상한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정 사회의 상호 배려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문화적 격차가 중요한 요소라면, 유입국 내부의 이주민 집단으로서 유입국과는 상이한 문화적 양식을 보유하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규모는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 저자는 유출국 이주민과 유입국 원주민 간의 문화적 격차가 커질수록 이주민의 동화율이 감소하여 디아스포라의 규모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이주율을 높여 집단 간 신뢰도를 더욱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집단 간 신뢰의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주민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동화가 요구되며, 저자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공통의 언어 사용, 차별 철폐, 이주민 고유 관습의 선별적 금지 등을 제안한다. 저자는 "박애를 깨뜨리는 자유를 인권으로 여기면 곤란"(p. 148)하며, 다양성의 확대로 인한 편익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상호배려의 약화로 인한 비용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각 사회는 이 상충 관계를 잘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이주 정책은 "더욱 다양해질 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인식"(p. 104)하여 이주의 가속화를 예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이주의 파급효과에 관한 현재의 연구 부족에도 불구하고 "문호개방식 이주 정책에 지나치게 열광하는 사회과학자"(p. 187)의 주장과는 그 성격을 달리할 것이다.

한편 저자는 3부에서 이주로 인해 혜택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여기서는 특히 유입국의 순기능적 사회모델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라는 “공짜 점심”(p. 200)을 얻지만, 한편으로는 유입국 원주민들의 불관용으로 심리적 대가를 치르기도 하는 이주자의 양가적 상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4부에서는 이주가 유출국의 남은 원주민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를 살펴본다. 첫째, 이주를 통해 유입국의 순기능적 사회모델을 내면화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주자들은 유출국의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멕시코는 이주자의 역할로 고국의 정치참여도가 높아졌던 하나의 사례이다. 둘째, 이주는 이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따라서 유출국의 원주민들은 실패할 가능성을 감수하고라도 유입국에 진출하기 위해 교육에 투자한다. 이는 이주로 인한 유출국의 인재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 셋째, 이주민들의 송금은 원주민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준다. 그러나 저자는 이주민들이 이주를 가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주를 통한 피드백 메커니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주를 통해서는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없고, 이들이 귀국하여 고국에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어야만 전 세계의 극심한 빈곤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유출국 사회는 성공한 이민자가 고국으로 돌아올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빈곤을 야기했던 ‘유권자에 대한 책임, 소수자나 개인의 권리 존중, 법의 지배, 독단적 권력에 대한 균형과 견제’와 같은 민주적 제도를 결여했던 역기능적 사회모델을 순기능적 사회모델로 변모시키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저자의 말대로 저소득 사회는 텅 비어 버리고 말 것이며, 이는 세계 문화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순기능적 사회모델의 확립은 성공한 이주자가 고국으로 돌아와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유출국의 극심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1~4부에 걸쳐 이주가 상이한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저자는 마지막 5부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주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와 그 여파를 종합하여 세 집단 모두에게 최선이 되는, “양 진영의 합리적 우려에 걸맞는 효율적이고 간결한”(p. 353) 포괄적 정책을 제안한다. 그런데 저자는 포괄적 정책을 제안하기에 앞서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고

물질적 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구성원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공공재를 공급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적 공동체의 한 단위로서 현대적 의미의 국민 국가를 강조한다. 저자는 "정서적으로 볼 때 국가와의 자기 동일시가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식"(p. 315)이며 "국가는 세계적 시민의식을 방해하는 이기적 단위가 아니라 사실상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p. 314)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유럽 연합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를 초월한 정체성 공유는 극도로 어려운 일이며, 그러므로 이민에 관한 논의는 공동의 정체성을 공유하여 사회적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단위로서 국가를 기본적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주 정책은 유출국, 유입국 각각을 실재적 단위로 놓고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1) 다양성의 확대로 인한 상호 배려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주자 상한선 설정 및 이주자 선별 2) 유출국으로의 귀국을 장려하기 위해 망명자와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 배려 3) 다양성을 억제하고 디아스포라의 규모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동화정책의 지속적 시행 등을 제안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은 자국으로의 '불법' 이주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유입국의 '적대적인 광적 집단'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간 자유로운 이주를 전적으로 옹호하는 연구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접근 방법론이다. 합리성을 결여한 채 철저한 인종주의에 입각하여 이민 반대를 외치는 집단들은 차치하고서라도, 국가 간 이주를 옹호하는 '진보적인' 연구에서도 이주자뿐만 아니라 이주와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유입국의 원주민들과 유출국의 남은 사람들이 겪는 상이한 경험으로부터 이민문제를 종합적으로 조명한 '총체적 접근방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저자가 책의 전반에 걸쳐 지적한 바와 같이 이주를 옹호하는 전형적인 연구들에서는 '불법' 이주민의 전면적 합법화와 국가 간 이주의 전면적 자유화가 유입국 지역 공동체에 야기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 간 상호 배려의 약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감소, 신뢰 수준의 하락과 같은 역기능적인 사회적 효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러한 지적은 이민 문제에 관한 진보적인 연구들이 정치적 프로파간다 이상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저자가 제시한 포괄적 정책의 내용 그 자체보다도 이러한 포괄적 접근방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의 몇 가지 한계점들도 있다. 첫째, 저자는 국제적인 대량 이주는 극단적인 세계 불평등에 대한 반응이라 이야기하면서도, 그 불평등의 원인을 각국 고유의 사회모델의 차이로만 환원시킨다. 이에 따르면 이주의 책임은 전적으로 역기능적 사회모델을 보유한 유출국에 있다. 그러나 유출국의 빈곤은 단순히 유출국의 사회모델에만 기인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의 빈곤은 근본적으로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고소득 국가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로의 재편이 낳은 산물이라는 것, 따라서 유입국은 이주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또 다른 사실을 저자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가 언급하지 않은 국가 간 이주를 낳은 구조적 원인들에 관해 알고 싶은 독자들은 아비바 촘스키의 『Undocumented』를 참조하면 적절할 것이다.[1)]

둘째, 저자는 '이주민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유입국 원주민들에게 과연 이주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현재' 유입국의 원주민들에게는 '법적으로 이주를 통제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으로 대답한다. 그러나 이는 법 자체가 특정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의해 구성된 역사적 산물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몰역사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아비바 촘스키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이란 특정 국면의 인간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창안한 사회적 구축물[2)]이며, 따라서 그 변화의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법이 엄연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에는 수많은

1) 20여년 동안 이민 문제와 관련하여 강단에서 강의하고 글을 써왔으며 이민 관련 단체를 조직해왔던 역사학자 아비바 촘스키는 지난 몇 십년간 신자유주의적 긴축 조치와 시장 만능주의를 조장했던 미국의 정책들이 라틴 아메리카 내부의 생계 농업, 고용, 사회 안전망을 잠식해왔으며, 이는 라틴 아메리카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아비바 촘스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자국의 자원을 통제하거나 재분배하려는 라틴 아메리카 정부를 반대하거나 심지어 전복하는 등 외부의 강력한 세력으로서 라틴 아메리카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Aviva Chomsky, Undocumented (Beacon, 2014), 186-187.

2) *Ibid*, 23-24.

폴 콜리어, 『엑소더스』, 김선영 옮김, 21세기북스, 2014.

허클베리 핀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인간을 자의적으로 구분하는 법이 부여했던 도덕적 딜레마 속에서도 적지 않은 백인들과 여타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짐이 처해 있는 조건들과 투쟁했던 것이다.[3)]

성균관대학교, shindorim@gmail.com

3) Jonn S. W. Park, Illegal Migrations and the Huckleberry Finn Problem, (Temple University, 2013), 17.

호모미그란스 휘보

I. 연구회 일정

■ 2014년 하반기 콜로키움

- 일시: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한성대학교 미래관 소회의실
- 발표
  발표1. 조원(서울대), 몽골제국시기 色目人들의 중원 이주와 정착
  발표2. 야마토 유미코(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일본시민에 의한 조선인을 위한 추도비건립운동 : 야마구치현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사례로
  통역 : 한혜인 (성균관대)
  발표3. 김진영(서강대), 프랑스 1927년 국적법을 통해 본 인구증진 담론과 외국인 혐오다

■ 2014년 학술대회

다문화 사회와 시민성: 탈경계 시대의 국민국가와 이주자의 권리

- 일시: 2014년 12월 19-20일
- 장소: 창원대학교 글로벌다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단 강의실

개회사 (12월 19일 13:00-13:20)
사회: 신동규(창원대)
축사: 이찬규(창원대 총장)

제1부: 국민국가의 경계와 이민자 (12월 19일 13:20-18:20)

사회: 박현숙(서강대)

1. 신동규(창원대) - 국민경제부흥과 이주노동자의 필요성 : '영광의 30년'의 노동력

2. 박단(서강대) - 탈식민화와 새로운 '프랑스 국민'의 정의: 알제리인의 유입과 국적법의 변화

3. 문종현(한양대) - 국민국가와 집시: 19-20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4. 홍용진(고려대) - 국적과 인권: 1932년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의 한인들

☞ 토론: 임승휘(선문대), 김용우(한국기술교대), 이용일(대구교대)

제2부: 이민 소수자의 권리와 사회평등을 위한 교육모델의 탐색 (12월 20일 09:00-12:00)

사회 문경희(창원대)
1. 윤용선(한성대) - 인종주의 극복을 위한 서양사 교육의 필요성과 교수법

2. 박단(서강대) - 신인종주의 극복을 위한 현대사 교육의 필요성과 교수법

3. 문종현(한양대) - 탈자문화중심주의 교육의 필요성과 교수법

4. 홍용진(고려대) - 역사 속 이주를 통한 국제교류 증진 사례 소개의 필요성과 교수법

5. 이찬행(성균관대) - 인종차별 사례 및 처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교수법

6. 오영인(성균관대) - 이민자의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교수법

제3부: 이주와 통합의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 (12월 20일 13:30-17:00)

사회: 양재혁(중앙대)

1. 이찬행(성균관대) - 1920년대 미국 연방대법원의 귀화 판례에 대한 검토: 담론적 실재로서의 백인성

2. 오영인(성균관대) - 미국 이민 행정관료주의의 역사적 기원: 전간기 이민국의 자율성확대와 이민자들

3. 윤용선(한성대) - 이주민 통합에 있어 문화와 경제의 의미: 독일 터키 이주민을 중심으로

☞ 토론: 황혜성(한성대), 권은혜(한양대), 이민경(서강대)

4부 종합토론 (12월 20일 17:00-17:30)
사회: 박지현

폐회사
사회: 신동규(창원대)
폐회사: 박단(이주사학회 회장)

이주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9년 2월 16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주사학회의 연구 활동에 있어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예방・근절하고 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과 범위

1. 이 규정은 본 연구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 활동의 범위는 본 연구회에서 주관・참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문과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이민인종연구”(가칭)의 투고원고이다.

제3조 연구윤리의 준수 의무

1.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한다.

2.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4.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활동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와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고, 총무이사와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3인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호선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4. 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해당자 본인에게 즉각 전달하고 4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준다. 기간 내 소명이 없을 경우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은 확정되고, 연구회는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5. 소명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 재 소집된 윤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번복・경감할 수 있다.

6.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허가하지 않는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공표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의 연구회 연구 활동 참여를 3년 동안 금지한다.

제5조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

1.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는 이후의 학술지 논문투고가 3년 이상 금지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7조 본 규정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호모 미그란스』 투고 규정

2012년 6월 14일 개정

제1조: 원고의 투고

1. 투고원고의 컴퓨터 파일을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2. 투고원고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투고원고는 컴퓨터 프로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아 한글'로 작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4.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 15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투고 원고 매수가 200자 원고지 200매를 넘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가불가능하다.
2) 서평의 경우, 각주를 포함한 투고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에 3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원고의 작성

1.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 제목은 로마 숫자(I, II, III...)로 하며, 절 제목은 숫자(1,2,3)으로 한다.
위치는 맨 왼쪽에 둔다.

3. 본문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1)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처음 나올 때에만 ( ) 안에 원어를 병기한다. 서양 인명은 처음 나올 때 1회에 한해 full name으로 쓴다.
(예) 인명 - 에릭 홉스봄(Eric Hobsbaum)
(예) 책명 - 『사회과학사전(Dictionary of Social Sciences)』
2) 기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1) " " : 인용
(예) 그는 "진리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 ' : 강조 또는 재인용
(예) "르네상스와 '시민적 휴머니즘'"; '프랑스 사노당(FTSF)'
(3) 『 』(전각기호) : 문헌, 저서, 신문 등
(예) 홍길동, 『서양문화사』
(4) □ □(전각기호) : 논문

(예) 홍길동, □1930년대 독일 노동조합□
(5) · (가운데 점) : 동일 사항의 나열
(예) 정치·사회·경제·문화에 걸쳐
(6) 진한 글씨 : 인용문에서의 강조
(예) 프랑스 대혁명의 3대 표어는 자유, 평등, 우애이다.
(7) 영화명, 미술작품명 등은 < > 로 표기한다.
3) 외국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각주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 기호 √ 는 띄어쓰기를 표시한다.
1) 인용 문헌이 편서일 경우 편자의 이름 끝에 편(編) 또는 ed.를 기입한다. 영어 및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 단행본과 논문의 제목에서 전치사, 관사, 접속사를 제외한 단어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다. 관사의 경우도 처음에 오는 경우는 대문자로 쓴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문헌의 경우 ed., 대신 dir., hg., 을 쓸 수 있다. 부제가 있는 경우 : (콜론)을 사용한다(예3).
2) 서양어, 동양어, 한국어 모두 인용 문헌의 페이지 수는 표기하지 않는다. (예1) 홍길동√편,√『서양사강의』√(서울:√길동출판사,√1992),√12.
(예2) 홍길동,√□그리스인의√역사서술□,√허균√편,√『서양고대사√강의』(서울:√길동출판사,√1996),√12.
(예3)Gary√Kates,√ed.,√The√French√Revolution:√Recent√Debates√and√New Controversies
√(London√&√New√York:√Routledge,√1998),√12.
(예4)J.√S.√Morrill,√"The√British√Patriarchy?√Ecclesiastical√Imperialism√under√
the√Early√Stuarts,"√A.√Fletcher√&√P.√Roberts,√eds.,√Religion,√Culture,√and√S
ociety√in√Early√Britain√(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1994),√12.
3)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된 논문은 □ □(반각기호)안에, 단행본은 『 』(반각기호)안에 제목을 넣는다.
(예1) 홍길동,√□호레이쇼√얼져와√성공신화□,√『미국사연구』,√4집√(1996),√12.
홍길동,√『프랑스√근대사√연구』√(서울:√길동출판사,√1998),√12.
(예2) 木畑洋一,√『帝□のたそがれ:√冷□下のイギリスとアジア』√(東京:√東京大□出版□,√1996年).
(예3) 草光俊男,√「東アジアの構築：表象空間の□見と近代ドイツと日本」,√『史□□誌』,√3 □√(2004).
4)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西洋語)로 된 논문은 " "(한글타자용)안에 제목을 써넣고, 단행본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다.
5) 단행본의 경우 이름, 성, 책명(이탤릭), 권수(있는 경우), (출판지명: 출판사, 연도)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1)Paul√Tillich,√Systematic√Theology,√3√vols.√(Chicago:√Chicago√University√ Press,√ 1951),√9.
(예2)Michel√Vovelle,√La√Révolution√contre√l'Eglise-
De√la√Raison√à√l'Etre√ Suprême √(Paris: √Galli-

mard,√1988),√12-13.
(예3)Michael√Schneider,√Streit√um√Arbeitszeit.√Geschichte√des√Kampfes√um√ Arbeitszeitverkurzüng√in√Deutschland√(Köln:√Suhrkamp,√1984),√15.
6) 정기 간행물의 경우, 이름, 성, "논문제목", 잡지명(이탤릭), 권수 (연도), 인용 페이지 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1)James√Eayrs,√"The√Political√Ideas√of√the√English√Agrarians",√Canadian√ Journal√of√Economic√and√Political√Science,√18-3(1952),√287.
(예2)Serge√Bianchi,√"Les√Curé√Rouges√et√la√Révolution√Française,"√Annales√ Historiques√de√la√Révolution√Française,√249(1982),√364.
(예3)J.√Kocka,√"Zurück√zur√Erzählung?√Plädoyer√für√Historische√Argumentation,"
√Geschichte√und√Gesellschaft,√10(1984),√395-408. z
7)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1) 바로 앞의 것인 경우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경우: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
(예) 홍길동,√『서양√문화사』√(서울:√길동출판사,√1998),√13. - 홍길동,√같은√책,√25. 서양어(西洋語)의 경우: Ibid 로 표시한다.
(예)William√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The√Language√of√Labor
√from√the√Old√Regime√to√1848√(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1980),
√120.
- Ibid.
- Ibid.,√130.
(2) 바로 앞의 것이 아닌 경우
op. cit., loc. cit., 혹은 '앞의 책', '전게서', '상게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 대신 저자와 책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줄여서 표기한다.
(예1) 홍길동,√『서양의√지적√전통』√(서울:√길동출판사,√1998),√13.
→ 홍길동,√『서양의√지적√전통』,√15.
(예2)William√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The√Language√of√Labor√
from the√Old√Regime√to√1848√(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1980)
,√120.
→ Sewell,√Work√and√Revolution√in√France,√122.
8) 번역서의 경우, 역자, 번역서명, 출판사항만을 쓰고 원서의 명은 표기하지 않는다.
(예) E.√J.√Hobsbawm,√강명세√역,√『1780년√이후의√민족과√민족주의』√(서울:√길동출판사,√1994), 30.
9) 웹 사이트 인용의 경우, 인용문의 주소와 검색일을 표기한다.
(예) http://www.answers.com/topic/multiculturalism (검색일: 2009년 11월 14일)

제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4조 본 규정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호모 미그란스』 편집 규정

제정: 2009년 2월 16일

제 1장 편집위원회

제 1조 (편집위원회) 본 연구회는 학술지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Homo Migrans – Migration, Colonialism, Racism)』의 편집과 간행을 위한 편집 위원회를 둔다.

제 2조 (구성, 소집, 의결)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과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계획, 논문 투고 및 심사, 기타 원고 게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 2장 투고

제 4조 (투고 자격) 원칙적으로 학술지에는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특수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비회원에게도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

제 5조 (원고의 종류)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는 글은 연구논문, 비평논문, 서평 및 기타로 한다.

제 6조 (원고작성요령) 투고 논문의 분량, 원고 작성상의 주의점 등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원고작성요령을 둔다.

제 7조 (학회지 저작권 일부 이용과 수입)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온라인상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온라인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이메일(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동의서 스캔파일 첨부) 또는 우편으로 본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작권의 수입은 본 연구회에 귀속된다.

제 3장 심사

제 8조 (심사위원)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2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위촉 및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 9조 (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1)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2) 논문 주제의 독창성 및 학술적 가치

3) 논리전개의 명확성 및 문장 표현력

4) 참고문헌 활용의 적절성 여부

5)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 여부

제 10조 (심사 결과 및 판정) 심사결과는 A(게재 가), B(수정 후 게재 가),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A, A: 게재

A, B: 게재

B, B: 수정 후 게재

A, C: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A, D: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B, C: 수정 후 재심사

B, D: 수정 후 재심사

C, C: 수정 후 재심사

C, D: 게재 불가

D, D: 게재 불가

제 12조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3조 (심사 결과 통보)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14조 (기타 원고 심사) 논문 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형식, 내용, 분량 등의 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제 4장 학술지 발행

제 15조 (발행자): 이주사학회 회장으로 한다.

제 16조 (발행횟수 및 일자): 연 2회,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발행한다.

제 17조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